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요약보고서 | 2024. 3.

제 출 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요약)로 제출합니다.

2024년 3월

전북연구원 (원장 이남호)

〈목 차〉

1. 비전 체계	
1.1. 국내외 환경	1
1.2. 전북의 특수성	3
1.3.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8
1.4.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13
2. 20대 전략의 중장기 방향	
2.1. 생명산업 육성	17
2.2. 전환산업 진흥	23
2.3. 생명경제 기반 구축	29
2.4. 도민행복 증진	35
2.5. 자치분권 강화	41
3. 특례 발굴	
3.1. 특례 발굴 방향	47
3.2. 특례 발굴의 경과	49
4. 「전북특별법」 개정 대응	
4.1. 전부개정 경과 및 내용	67
4.2. 전부개정 효과(미래상)	74
5. 2단계 특례 발굴과 개정 전략	
5.1. 전부개정 과정의 성과와 과제	77
5.2. 2단계 추진 방향	79
5.3. 전부개정 미반영 특례 대응	81
5.4. 법 개정 방법 검토	82
5.5. 중장기 전략으로서 차등적 분권제	84
6. 거버넌스와 홍보	
6.1.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87
6.2. 전북자치도 관련 언론보도 분석	93
6.3. 도민 인식 제고 및 브랜딩 전략	95
6.4. 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 검토	100

1

비전 체계

1.1. 국내외 환경

□ 세계경제 위기와 대전환 시대

- (적자생존 경제의 한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 등 인류를 위협에 빠트린 ‘적자생존 경제’에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생명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음
 - 다가올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생산 방식을 택해야 하는 상황

○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적자생존 약탈경제인 ‘죽음의 경제’에서 ‘생명경제’로 전환을 주장

* 자크 아탈리가 개념화한 ‘생명경제’(The Economy of Life)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목표로 삼음. 기후, 환경, 건강, 의료, 쓰레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스포츠, 섭생, 농업, 교육, 클린에너지, 디지털, 주거, 문화,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

“성장이 저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되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생산해야 한다.”

○ (생명경제의 핵심요소) 보건(의료와 위생관리), 건강한 식생활(친환경 농업), 교육과 문화 등과 관련한 생산·소비의 경제

출처: 자크 아탈리(2023), 『생명경제로의 전환』

- (생명·안전 지향하는 글로벌기업)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기업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벗어나 기업 자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기업활동에 관심이 높아짐
 - * 팬데믹에 따른 주거지 변화와 글로벌기업의 이주

○ 슬로바키아 브라티스라바: 유럽 테크기업 상위 5,000개에 속하는 100여 개 벤처기업이 이주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하이테크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고학력 청년 인력과 유럽 대도시의 절반에 불과한 집세가 강점

- (적자생존 경제로 내달리는 한국경제)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하는 세계경제 흐름과 달리,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2020년 기준, 28.4%)의 성장을 지속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은 크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지 않음. 이를 두고 자크 아탈리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한국 역시 죽음의 경제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함



출처: kdpress.co.kr, kbs.co.kr 등 참조

□ 한국형 생명경제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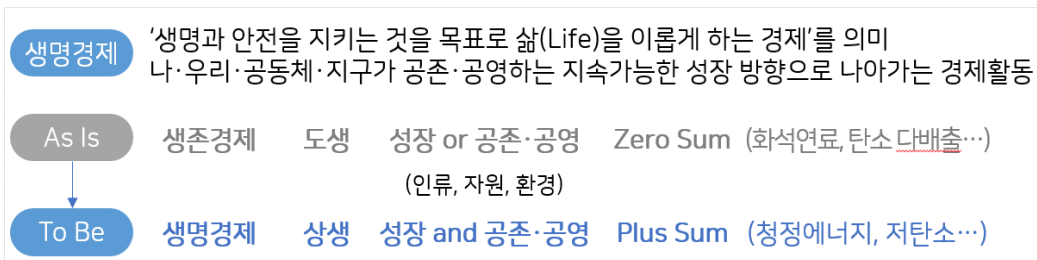
- (총동원령의 전시경제 필요) 코로나 팬데믹에 ‘전시경제’가 필요하였듯(자크 아탈리), 생명·안전의 생명경제로 전환은 국가적 역량의 총동원이 필요함. 따라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생명경제를 경제 전반에 도입하려면 총동원되는 전시경제처럼 특별자치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총동원령급 특례를 부여한 제주도: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관광객 2006년 531만명→2021년 1,201만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화 실현

- (기존 산업의 전환과 생명경제 선도)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생명경제로의 대대적 전환과 한국형 생명경제 창출을 통한 생명경제 시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산업적 시도의 허용과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기존제도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사례: 자동차산업) 화석연료 사용 내연기관차 →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 생명경제 산업: 농생명, 재생에너지, 생명과학(바이오), 라이프케어, 반려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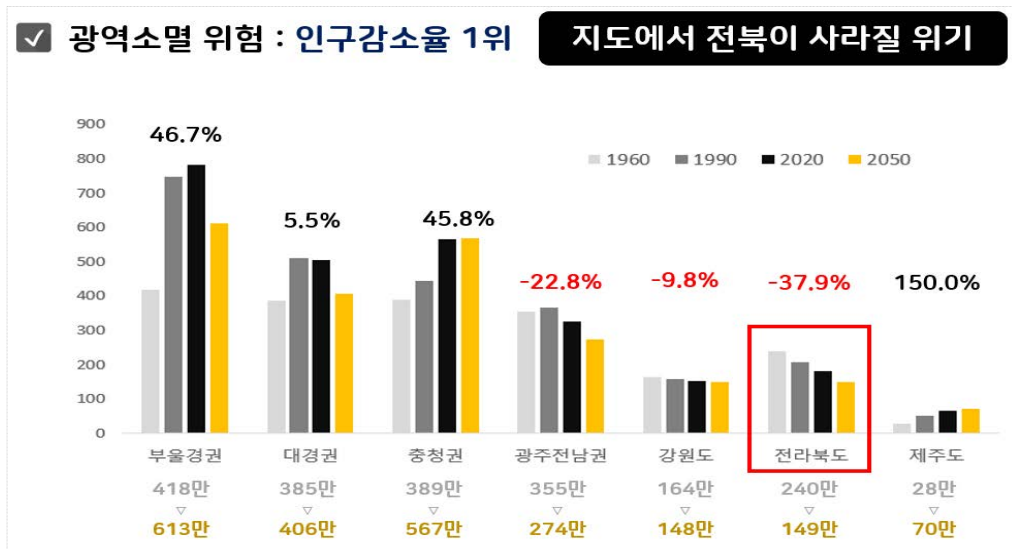


1.2. 전북의 특수성

□ (전북소멸 위기) 기초의 소멸을 넘어 광역 소멸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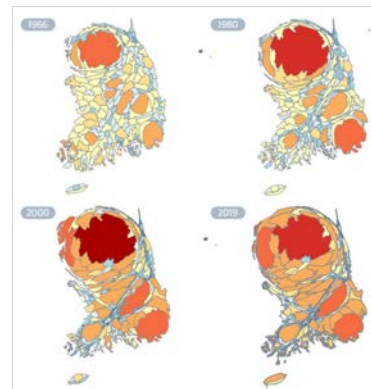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전북의 인구는 149만 명(강원 148만명)으로 추정됨. 이는 1960년 대비 2050년 인구감소율이 -37.9%를 의미하는데, 이 기간의 인구감소율은 주요 광역권에서 1위에 해당됨

* 인구증감(1960~2050) : 수도권 89.5%, 부울경권 46.7%, 충청권 45.8%, 대경권 5.5%, 제주도 150.0%, 강원도 -9.8%, 광주전남권 -22.8%, 전북자치도 -37.9%



- 전국 인구 대비 전북 인구의 비중은 1960년 9.6%에서 2050년 3.1%로 6.5%p가 하락함. 전국 인구 대비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전북 인구가 인근 대도시로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함

* 전북의 인구비중 : (1960년) 9.6% → (1990년) 4.8% → (2020년) 3.5% → (2050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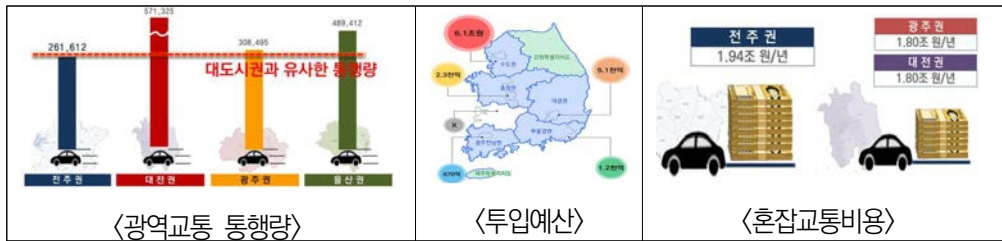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dosinews.com>

- 인구감소율이 현 추세라면 전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주변 대도시로 모든 인구와 기능이 흡수되어 지도에서 전북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위기임

□ (광역소멸의 원인) ① 국가정책의 4중 차별에 따른 절대적 소외

- (광역시 없는 전북의 소외)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음
 -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과 지원, 대규모 SOC 조성(대광법)과 지원에서 소외, 지역 인프라 격차 심화

* (사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이나, 전체 투입 7조원 중 전북도 투입 예산 없음. 국가예산 투입 미흡에 따른 광역교통망 미설치로 혼잡교통비용은 광역시 수준으로 심화



- (전국 유일의 4중 차별) 수도권 대비 지방 차별, 영남권 대비 호남권 차별, 호남권 내 차별*, 초광역권 지원 차별** 등 전북은 전국 유일의 4중 차별을 받음

*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2020년 기준)

구분	전북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계
공공기관	6	27	6	39
특별지방행정기관	3	12	1	16

출처 : <https://www.ijan.kr/article/20200107701984>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균특법) 초광역메가시티(14개 시도) : 수도권(3), 충청권(4), 동남권(3), 대경권(2), 광주전남권(2)



□ (광역소멸의 원인) ② 국가 식량생산기지 사수 → 최빈지역으로 전락

- (농지를 지켜온 전북) 근대 이후 산업화(1970~2020년) 과정에서 농도전북은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식량생산의 국가기지 역할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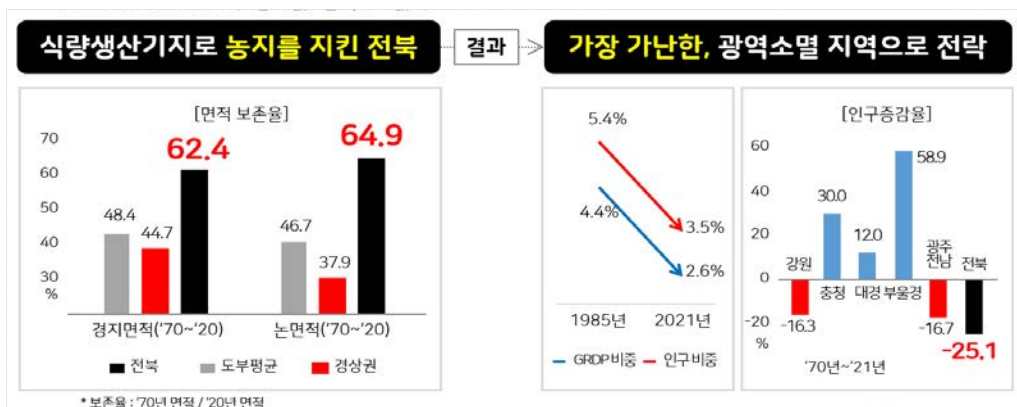
國家軍儲 皆靠湖南 若無湖南 是無國家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
 - 국가 군량을 호남에 의지하였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 경지면적 보존율('70~'20) 62.5%, 논면적 보존율('70~'20) 64.9%
 - * 도부 보존율: 경지 48.4%, 논 46.7%, 경상권 평균 보존율 : 경지 44.7%, 논 37.9%
- 농업진흥지역 감소(1,202ha, '19~'21년): 전체 대비 경기 34.3%, 경남 18.1%, 충북-전남 13.1%, 충남 7.7%, 경북 6.9%, 전북 4.7%, 강원 0.9%

-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 국가 식량생산 기지로 50년 동안 농지를 지켜온 전북은 산업화에서 뒤처지며 자본이탈→인구유출→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고, 농업생산성 악화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함

- 50년 동안 농지 지켜온 전북의 주요 지표

인구	전국 총인구 비중	▷('85년) 5.4% → ('22년) 3.4%
	인구증감률('70~'21)	▷-25.1% (광역권 중 최하위)
경제	전국 GRDP 비중	▷('85년) 4.4% → ('21년) 2.6%
	1인당 지역총생산 ('00~'20)	▷도부 최하위(29,252천원): 충남 53,078 > 전남 43,957 > ... 강원 32,026 > 제주 29,334 > 전북 29,252천원
	청년 고용률('00~'21)	▷도부 최하위(36.5%): 충북 46.2% > 경기 45.5% > 제주 42.6% > 충남 42.4% ·· 전남 37.2% > 전북 36.5%



□ 생명자원 활용한 생명산업의 거점

- (생명의 역사성) 전북은 한반도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강의 발원지(금강/뜬봉샘, 섬진강/데미샘)이면서, 동아시아 및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지역으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임
 - 생명사상의 원류인 동학사상이 농민혁명으로 발현된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으로서 생명의 역사성을 대표함
- (농생명산업 수도) 생태자원이 풍부하면서, 오랜 기간 농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해 온 전북은 국가가 추진하는 농생명 4대 혁신클러스터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생명산업의 수도임
 - 근대 이후 산업화(1970~2020년) 과정에서 농도전북은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식량 생산의 국가기지 수행
 - * (혁신클러스터) 종자생명(김제), 미생물(정읍·순창), 국가식품(익산), 동물용의약품(익산)
- (청정에너지 중심)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서해안은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및 수소(그린수소 포함) 등 신에너지의 국제적인 거점으로 성장함
- (K문화 본향) K문화의 본류인 전북은 전통문화 자원을 최대한 보존한 지역으로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농악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케이문화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함



□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광활한 새만금

- (규모) 총면적 409km²(1억2천만평) - 농생명권역 35.6%, 산업·연구용지 25.6%, 복합개발용지 21.3%, 관광레저용지 10.9%, 배후도시용지 3.4%, 기타 3.2%
- (농생명용지) 새만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생명용지를 통해 생산, 가공, 물류 거점 등 농생명산업의 무한한 확장을 위한 기반 보유
- (첨단산업) 매립 및 조성을 통해 조성되는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부지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공급에 용이
 - * 이차전지 생산기업 평균 10만평 정도의 부지 필요
- (스마트 수변도시)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과 수변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있어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

[표 1-1] 새만금 기반시설 추진 현황

남북도로	6~8차로 27.1km, 1조원	'23.7월 전구간 개통
고속도로	4차로 55.1km, 2.4조원	'25년 완공
지역간 연결도로	20.7km, 1조원	'29년 완공
신항만	9선석, 3.2조원	'40년 9선석('30년 6선석, '25년 2선석)
공항	활주로 2,500×45m, 0.8조원	'24년 착공, '28년 완공('29년 개항)
철도	단선 47.6km, 1.3조원	기본계획('22.~'23.), '26착공 '30년 완공
새만금 수변도시	6.6km ² (200만평) 1조 3476억원	'24년 12월 용지매립·부지조성 완료

□ 전북의 글로벌 경쟁력

- (글로벌 브릿지) 전북은 중국·동남아시아와 국내 초광역권의 물류·교통을 연결하는 국제적 관문의 중심이며, 새만금(Ariul=물/생명)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자 글로벌 거점임
- 즉 전북은 생명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활용한 산업의 거점으로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사람·자본 교류의 글로벌 브릿지라고 할 수 있음

1.3.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1) SWOT 분석

□ 강점 (S)

-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 지역이자, 생명과 관련한 역사성을 대표하는 지역임. 또한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이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본이 교류하는 글로벌 브릿지로서 경쟁력을 갖추
- 「전북특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국가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수성이 분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역사적 요소) 생명중심 사상, 생명순환의 쌀문명, 4대강의 발원, 새만금

- 생명사상의 원류인 동학사상이 농민혁명으로 발현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 전북은 동아시아 및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지역으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 구축 지역
-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켜온 주요 강의 발원지(금강/뜨봉생, 섬진강/데미샘) 소재

- (인문적 요소)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

- 적자생존경제의 핵심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생명산업의 수도
- K-문화 본류(한복, 한옥, 한지, 한식, 농악 등)

- (지역적 요소) 사람·자본 교류의 글로벌 브릿지

- 중국·동남아시아와 국내 초광역권의 물류·교통을 연결하는 국제적 관문의 중심
- 새만금(Ariul=물/생명)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자 글로벌 거점

- 전북은 정부가 탐다운 방식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추진의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함

□ 약점 (W)

- 전북은 생명경제라는 세계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대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국토개발계획의 한계와 더불어,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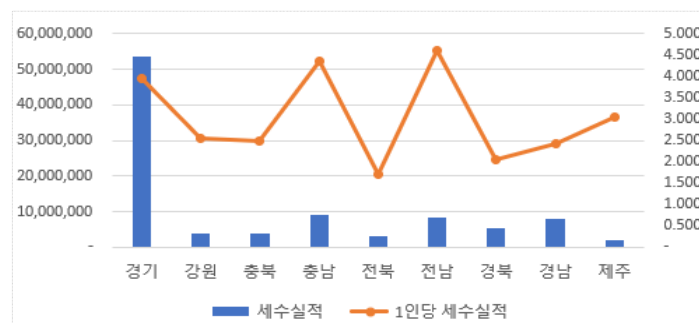
다양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국가 주도의 규제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저하뿐 아니라, 식량생산기지로써 산업화에 뒤쳐진 전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형평성 논리로 인하여 지역주도 개발의 효율성이 악화됨으로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불러옴

- 최고 수준의 1인당 조세 부담액을 자랑했던 전북이 농지,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와 산업적 기반 취약으로 국세 납부액이 전국 0.91%*에 불과한 지역으로 전락

* (전북 비중) 2017년 1% → 2021년 0.91%

[그림 1-1] 지역별(도부) 세수 비교 (기준: 2021년, 단위: 백만원)



□ 기회 (O)

- 적자생존식 세계경제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을 꾀함
- 전북은 기존의 적자생존식 경제에서는 국가 식량생산기지로써 농지를 보존한 결과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나, 생명경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방식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전북에는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생명서비스산업)과 기존 산업을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하는 산업(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 모두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세계 최고의 농업 연구개발 역량이 구축되어 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와 친환경 미래 산업(바이오·모빌리티 등) 분야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역량 보유
- 새만금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

업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시험 무대(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위협 (T)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광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함.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지역이 지역소멸·위기 지역으로 나타남
- 수도권 대비 지방, 영남권 대비 호남, 호남권 내 차별, 특별자치도 등 광역경제권 등에서의 차별 등 4중 차별에 따른 산업적 기반 마련이 어려움
-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이 떠나고, 기업을 따라 사람이 떠나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기초생활 인프라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방향

- SWOT 분석을 토대로 강점을 강화하고 기회를 살리는 강화전략(SO), 기회를 살려 약점을 보완하는 보완전략(WO), 강점을 통해 위협을 극복하는 극복전략(ST), 약점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어전략(WT)을 설정함

SWOT 분석 및 대응 방향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표 생태보존·문화 중심 ● 농생명산업·에너지산업의 거점 ● 사람·자본 교류의 글로벌 브릿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획의 소외에 따른 불균형 ●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반 취약 ● 분야별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중심의 생명경제로의 세계경제 전환 ● 생명자원 및 첨단기술 융합 산업의 급성장 ● 이차전지·수소산업 등 대규모 기업 유치 	[강화 전략(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경쟁력으로 '생명' 특화 비전과 전략 마련: 생명경제 ● 생명자원 융합 신산업(농생명·청정에너지·바이오 등) 전략 육성 ●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보완 전략(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제조업이 아닌 생명경제의 거점 조성으로 불균형 해소 ● 전북에서 성장 중인 이차전지·수소·미래모빌리티 등 규제 해소 ● 미래 첨단산업의 산업 기반 마련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 기능의 상실 위기 ● 4중 차별에 따른 산업적 불균형 심화 ● 필수의료체계 등 생활인프라 붕괴 	[극복 전략(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중심의 미래첨단산업으로 전환 ●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와 이민사회로의 전환 추진 ● 국제적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 	[방어 전략(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과 관련 특례 발굴 ● 산업기반 취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부각, 국가의 지원 확보 ● 생활인프라 구축 위한 규제 해소

(2) 지역 발전의 방향

□ 광역의 필수요소(3+1)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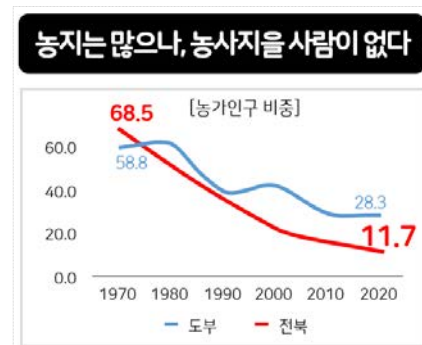
- (지방소멸의 악순환) 산업화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기업(자본)이 집적된 지역으로 전북의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생활인프라와 사람이 부족한 전북은 또 다시 기업 유치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짐
- 기업과 자본을 따라 사람이 이동하면서 지방소멸이 나타나므로 악순환의 핵심 고리인 자본(기업)에서부터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인구를 유입하려면 지방소멸 악순환 핵심 고리인 자본(기업)이 중요하며, 자본(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사람이 지역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인구 유출을 막고 자본(기업)을 유치하려면 생활기반(인프라)이 필요함
-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 필수요소는 ‘자본’, ‘사람’, ‘인프라’이며, 여기에 자본, 사람, 인프라와 관련하여 지역특화를 추진할 ‘자치’(분권)가 포함됨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토지, 접근성, 고용, 생산, 유통·수출 등 ● 산업 : 주력산업, 미래산업, R&D, 외국인 투자 등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인구 : 이민자(영주/투자/결혼), 유학생, 계절노동자 등 ● 생활인구 : 체류인구, 유동인구, 관계인구 등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서비스 : 보건, 의료, 교육, 섭생, 문화 등 ● 민생경제 : 소상공인, 골목상권, 로컬푸드 등

□ (지역발전 핵심 방향) 농도→생명산업 거점→생명경제 실현

-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전북) 전북은 GRDP 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1985년 17.2%, 2021년 6.7%) 농도전북의 위상은 여전하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여*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음

* (농가인구 비중 변화) (1970년) 68.5% → (2020년) 11.7% (전국 도부 평균 28.3%)



- (농도전북의 대전환 산업화 전략) 지방소멸 고리인 자본(산업, ①)을 유치하고 산업·생활 인프라(②)를 구축하면, 일자리와 안전한 정주를 원하는 청년·정주이민·인재 등 사람(③)이 유입됨.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전통적인 농업에서 생명자원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친환경 생명산업(①)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안전 인프라(②)를 구축하여 청년·정주이민·인재 등 사람(③)이 모이게 하는 ‘농도전북의 대전환 산업화’ 전략이 필요함
- 전북이 가진 풍부한 생명자원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생명산업을 진흥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안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적자생존의 경제에서 생명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생명경제의 국가 및 국제 거점으로 대전환을 추진함
 - (생명경제의 산업 분야)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생명산업(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생명서비스산업)과 기존 산업을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하는 산업(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 모두를 포함
- 새만금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지 공급 기준 적용 완화로 특화산업 집중 발전에 유리함. 따라서 하이퍼튜브, 이차전지, 한류(케이팝), 금융산업(부동산) 등 각종 정부 정책의 시험 무대(테스트베드)로 활용함
- 종합하면, 광역소멸이라는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전북의 특수성(농지와 청정자원, 새만금, 첨단융합기술)에 특례로 주어지는 자치권을 구현함으로써, 전북의 생명자원과 새만금을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생명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비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1.4.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 생명경제의 개념과 요소

- (생명경제 개념) 생명경제(The Economy of Life)를 제시한 자크 아탈리는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경제라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제시하였다면, 지역발전과 연계하려는 전북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새로이 적용해야 함
- 전북이 가진 강점(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실현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이 개념에 담겨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이 추구하는 생명경제의 학술적 개념을 “생명자원 또는 생명자원 정보(대상)를 친환경적으로 활용(방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목적)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명·안전의 생태적 기반을 유지·발전시키는(목적) 활동과 결과물”로 설정함

- (생명자원)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과 비생물적 ‘청정자원’ 등을 포함

- (생명경제 요소)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되려면 생명자원과 생명환경이 있어야 하며, 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자원을 활용할 주체가 있어야 함. 즉 생명경제의 요소는 생명자원, 생명주체, 생명환경임
- 생명경제는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① 생명주체(인간-자연)의 공생, ②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의 창출,* ③ 생명·안전의 생태·생활기반 구축**을 실현함

* 생명산업 : 생명자원 자체, 또는 생명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 생명·안전의 생태적 기반 :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환경’과 ‘생활기반’

[표 1-2] 생명경제 개념의 주요 개념 설명

생명자원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과 비생물적 ‘청정자원’ 등을 포함
친환경적 활용	● 적자생존식 경제방식의 전환, 자연과의 공존·공영의 경제 방식
경제적 가치(생명산업)	● (생명산업) 생명자원 자체, 또는 생명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친환경(저탄소) 농수산, 미래 기능성 식품, 바이오(그린·화이트·레드·블루), 청정에너지, 청정수소·소재, 라이프케어, 반려산업, 생명서비스업 등
생태적 기반	●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환경’과 ‘생활기반’

-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명경제 방향)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생명경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전환경제, 생명산업, 생명환경과 관련된 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 (전환경제) 적자생존식 기존 산업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전환산업)
 - * (생명산업) 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창출
 - * (생명환경) 지속가능한 생태기반 및 생명산업의 환경 마련

□ 비전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비전) 전북의 특수성,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 세계적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전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수립함
- (방향) 적자생존 경제를 지속가능한 공존·공영의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전북자치도 비전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 (생명 중심 전환경제 구축)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주력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는 발신지
 - (지속가능한 생명경제 창출) 국제적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생명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의 자본·사람이 교류하는 국제도시를 조성
- (정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에 포함된 생명경제와 글로벌도시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지역발전의 방향에 맞춰 새롭게 정의함
 - (생명경제) 자크 아탈리가 제시한 생명경제 개념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에 맞춰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정의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

□ 비전, 5대 목표(3+2)와 20대 전략



2

20대 전략의 중장기 방향

2.1. 생명산업 육성

(1) 농생명산업 고도화

□ 특례 활용 농생명 산업구조 개선

-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투자유치·세제혜택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유입의 통로를 간소화하는 규정·규범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
- 농생명산업 기반조성과 함께 연관 산업분야에 대한 지구·특구 조성 및 이를 통해 발굴된 신산업 발전을 통해 생명경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특례 제정 필요
- 농업이 가지는 후방산업의 특성과 전방산업의 특성을 갖는 가공·유통 및 소비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산업간 연계 강화
- 주요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지역이 보유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육성) 지정 특례

□ R&D를 통한 농생명자원 고도화

- 농생명자원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소비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개발과정을 통해 농생명 원물이 가지는 생산적 가치와 소비적 가치를 연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례 필요
- R&D를 통해 확보된 지적자산을 농생명산업 현장에서의 실용적 활용을 통해 생명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농생명산업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주체들 간의 연합된 연구개발 자원 구축
- 지역 생명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도입과 더불어 필요

기업에 대한 이전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가치를 고도화

- 주요 특례 :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특례, 생명자원 연구·개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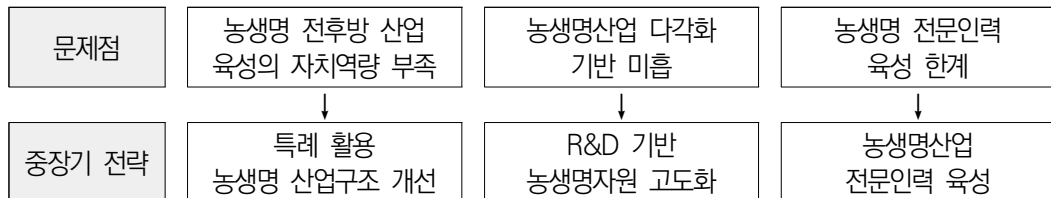
□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과 함께 발굴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생명경제의 실현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은 농생명현장에서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을 거쳐 가치소비에 이르는 생명경제의 가치를 담은 농생명생산물을 시장에 투입하여 지역거점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 주요 특례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례

* (사례) 「제주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표 2-1] 농생명산업 고도화 부문 현황 및 전략



(2) 의생명 산업 거점화

□ 의생명 소재 기술 확보

- 전북의 의생명 핵심 소재 기술 확보와 의료기기 산업생태계 확대 등 의생명 산업의 핵심 역량 확보
- 의생명 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융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을 위한 권한 위임

- 주요 특례 :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에 대한 권한 위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 허가지정 및 운영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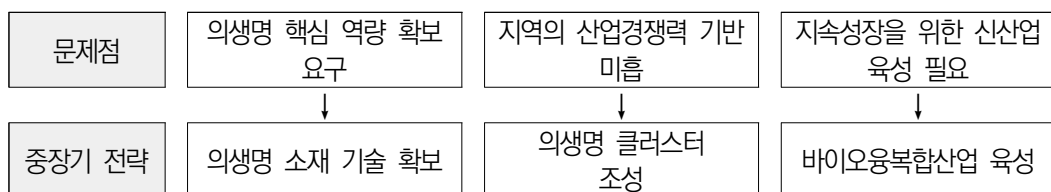
□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

- 전북의 일정 지역을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감염병전문병원의 우선 설치로 의생명 산업에 대한 전북의 역량 강화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주요 특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및 연구중심병원·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헬스케어특화지구 지정, 감염병 병원 우선 설치,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특례

□ 바이오융복합산업 육성

-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연구역량 향상과 기술개발 확대를 통한 바이오신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 선점
- 바이오 핵심기술 기반 바이오융복합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생명경제 핵심기반 구축
-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경쟁력 확보
- 주요 특례 :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 등

[표 2-2] 의생명 산업 거점화 부문 현황 및 전략



(3)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 주도적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여건 확보

- 세계 1등 수소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주도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의 책무 강화 필요
- 전북은 자체적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수소도시 14개 시군 확대, 수소산업의 기반 집적화, 수소특화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력양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등을 위한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한 특례 필요
- 단기적 자체적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소차, 수소충전소 확대,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확대 등 전북 주도적 관련 기반 구축 강화 전략 추진
- 중장기적 청정수소 공급 및 확대,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국가 산단 공급 및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 추진
- 주요 특례 :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특례, 청정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특례,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특례 등

□ 지역경제 환원적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권 강화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의 정당한 몫이 환원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성 확보
- 전북의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관련 주변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필요
-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과 연계하여 전북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설비의 설치 권고 강화. 단기적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성·주민수용성 확보 기반 대규모의 발전단지 조성

* 서남권 해상풍력 2GW(산업통상자원부 '20.7.18 보도자료 기준, 10년간 23조 경제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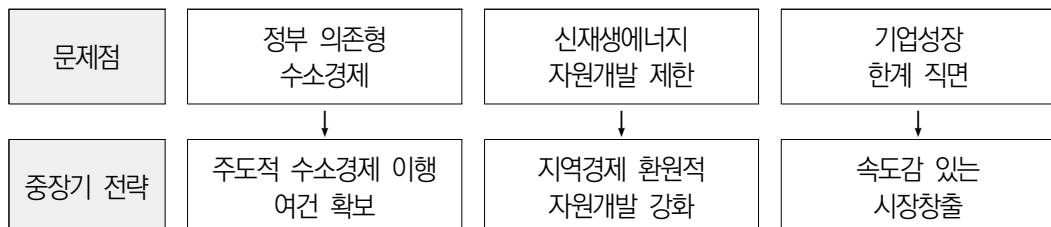
효과, 9만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 기대), 새만금 3GW 등 5G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기 추진

- 중장기적 대규모 발전단지 기반 전북경제 환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유화 기금 운영, 14개 시군 주민참여형 공유화 기금 확대
 - * (예) 동부 산악지역 육상 풍력단지 등
- 주요 특례 :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 청정에너지 실증클러스터 조성 특례, RE100 산업단지 구축 특례 등

□ 속도감 있는 시장창출로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 수요지 인근 내 에너지 생산,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특례 부여 필요
 - * (예)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력 직접거래,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 생산 및 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기반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 청정에너지 실증, 산업단지 내 RE100 실현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및 청정에너지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
 -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새만금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등 신·재생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등
- 주요 특례 : 에너지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례, 청정에너지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단지 구축 특례 등

[표 2-3] 첨단소재 융복합화 부문 현황 및 전략



(4) 생명서비스 산업화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실버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기술개발, 실증평가, 생산상업화를 결합한 클러스터단지 구축으로 전북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
-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에 따른 관련 인력의 양성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시너지 극대화
- 주요 특례 : 고령친화복합단지 조성·관리, 고령친화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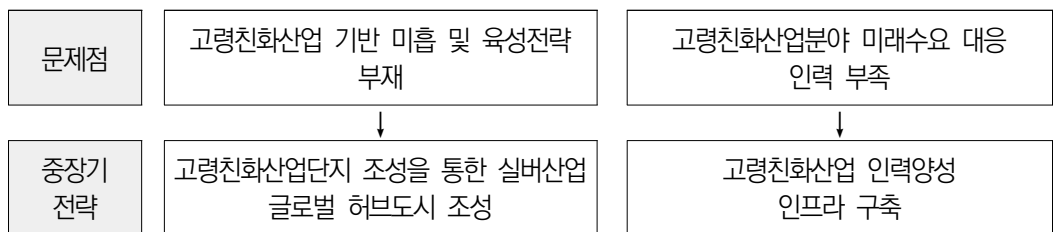
□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기반구축으로 실버산업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 거점도시로 조성
-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 복지, 경영, 회계,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복합적 전문성을 가진 융합인력양성체계 마련
- 주요 특례 : 고령친화산업 전문연수기관 운영,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등

[표 2-4]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인프라 구축계획(안)

구분	① 개발	② 실증	③ 표준화	④ 상업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R&D) · 고령친화산업 제품별 기술개발(제품개발) · 고령친화제품 관련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제품 사용평 평가 및 실증 · 사용성 평가 및 검증 · 안전성 점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표준화 및 인증 · 고령친화제품 표준 화 및 규격화 심사 · 고령친화제품 품질 규격화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제품 마케팅 · 고령친화제품 판로지원 · 고령친화제품 마케팅 · 고령친화기업 지원 · 고령친화벤처기업 육성
기관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노화연구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실증사업단	고령친화산업정보센터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표 2-5] 생명서비스 산업화 부문 현황 및 전략



2.2. 전환산업 진흥

(1) 첨단소재 융복합화

□ 전북 특화 자원 기반 탄소소재 신기술 진흥 강화

- 국내에서 전북이 유일하게 보유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인프라를 활용, 지역 내 기업, 연구기관, 병원, 대학 등과 협력하여 탄소소재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필요
- 전북이 보유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인프라를 활용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의료기기 핵심 부자재 국산화, 신뢰성 제고 지원 필요
- 중장기적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반 바이오헬스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산업 육성 거점화
- 전북 내 창업, 성장 기업의 생산, 수출 지원을 위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기 공급, 탄소소재 국가산단 확장 등으로 국내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
 - 특수목적 모빌리티,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등 전북 특화 탄소 융복합소재 기반 확대, 탄소 융복합소재 기술역량,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한 인력양성
- 주요 특례 :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탄소소재 클러스터 고도화, 탄소소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완성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개선, 연구개발 기반 강화, 인력양성 등 전폭적, 선제적 정책 지원 대응 여건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관련 기업 유치 필요
- 고품질·저가 소재, 고성능·친환경, 고효율·고안전 등의 차세대 소재 개발 등을 통한 첨단소재의 초격차 기술 확보, 핵심 기업 유치,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 필요
 -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3, 7공구 조기 착공,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과제 발굴,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등 핵심공급 기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북 특례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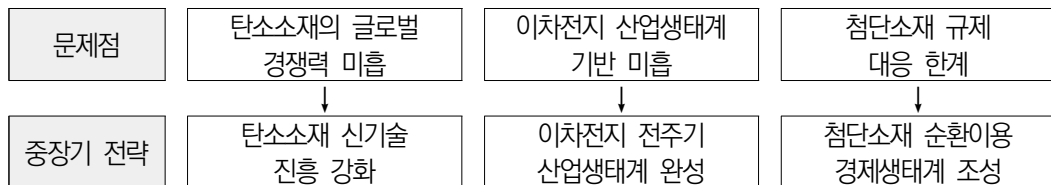
기업 투자 유치 확대

- 전북 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제공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 주요 특례 :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확장,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핵심기업 유치

□ 첨단소재 순환이용 경제생태계 조성

- 탄소 소재 재활용,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등 소재 순환이용의 생태계를 조성 핵심광물 재공급화 강화
 - 탄소소재 생산, 폐기, 재활용 등 지속 가능 탄소산업 생태계 강화
 - 사용 후 배터리 연구개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신산업 육성
- 주요 특례 : 첨단소재 고도화를 위한 기반 확대, 첨단소재 공급기지 역할 확대 등

[표 2-6] 첨단소재 융복합화 부문 현황 및 전략



(2)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 신소재 기반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 강화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프로그램 참여기업 확대 등을 위해 프로그램 신청에서 인증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해외 인증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기업수요와 관련 기술 트렌드 변화에 맞춘 도내 기업의 제품 품질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및 관련 지원프로그램 구축 필요
- 주요 특례 :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검사·인증장비 등 기준 적합한 자에 대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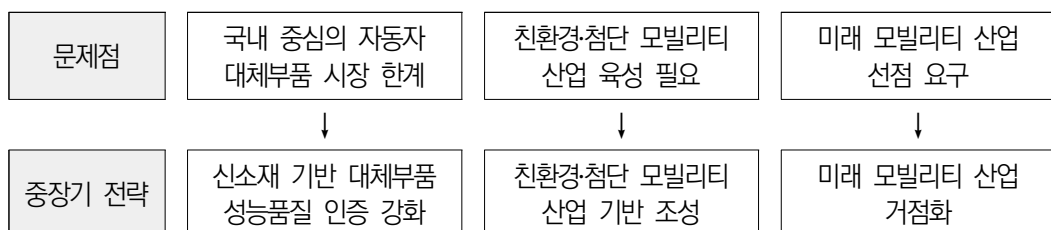
□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 및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 시장진출 유도
- 모빌리티의 통합운용을 위한 실증 시험구역 지정과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 모빌리티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향후 핵심 모빌리티 기업 유치
- 성능평가·품질인증 센터 설립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산업 특화로 전북 모빌리티 기업의 자생력 강화
- 주요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권한 위임,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

□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 미래 무인이동체의 설계, 제작, 시험평가, 실증, 인증 등 사업화의 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조성으로 기업 유치,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 기대
-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연구성과의 공유·확장을 통해 지역 핵심산업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구축
-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산업생태계 확장과 혁신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대
- 주요 특례 :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드론시범사업 구역 지정 및 운영,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

[표 2-7]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부문 현황 및 전략



(3) 국제문화산업 거점

□ 케이문화융합산업 기반 구축

- 개별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특화 분야를 선정, 우수 기업을 집적화하는 지역 특화형 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추진
- 경쟁력 있는 분야 선택하여 콘텐츠 특화(K-POP, 케이문화융합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콘텐츠 특화단지과 체험 공간 등 집적화되는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케이문화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
- 주요 특례 : 케이문화융합산업지구 지정·권한 특례, 케이문화산업 인력 양성 특례, 케이문화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례 등

□ 케이문화 강소·스타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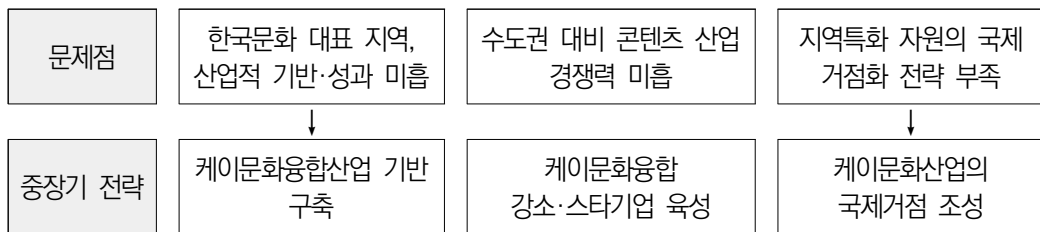
- 기업유치를 문화 분야로 확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타킷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마련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 유치
- 지역특화 콘텐츠로서 전통예술과 전통음식, 명상을 결합한 한국형 치유산업 등을 육성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군 치유정책·사업을 통합 추진
- 주요 특례 : 우수문화프로젝트·사업자 지원 특례, 케이문화 특화 기업 지원 특례, 케이문화융합 치유산업 육성 특례 등

□ 케이문화산업의 국제거점 조성

- 전북에 케이팝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교육벨트를 조성하여 국제적 케이팝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중심으로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지원함으로써 K-POP, K-게임, K-푸드, K-뷰티, K-댄스, K-웹툰, 태권도 등을 진흥
- 전북주도형 특구 지정을 통해 태권도 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족 기능 도시기반을 갖추고, 민간·외국인 자본 유치, 기업유치 지원 및 조세감면, 정주환경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태권도 산업, 관광 및 문화예술, 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 등 전북의 자원을 국제화하는 체험거점을 조성하고, 콘텐츠와 유산(명승·천연기념물·유무형문화재·고찰) 연계형 콘텐츠 제작과 체험을 지역 특화 콘텐츠 분야로 설정, R&D·상용화(TB) 거점으로 조성
- 주요 특례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운영 특례, 태권도특구 조성 및 활성화 특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지원 특례 등

[표 2-8] 교육자치 실현 부문 현황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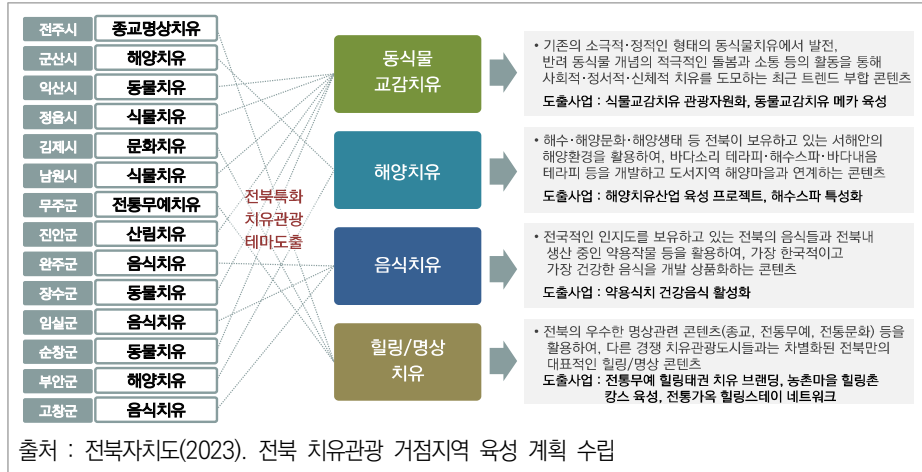


(4) 권역별 웰니스산업 진흥

□ 웰니스(치유)산업 기반 조성

-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웰니스 자원을 살펴보면, 한국 대표 전통문화, 우수한 농어촌환경, 건강음식 등 우수한 치유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시·군의 치유관광자원을 유형화하면, 종교명상치유·해양치유·동물치유·식물치유·문화치유·전통무예치유·음식치유 등으로 구분
 - 전북 ‘특화 치유테마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전북의 14개 시군별 지역 및 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을 특화하는 치유테마자원을 선정하고 이를 대표 사업으로 발굴
- 웰니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치유관광거점을 조성하며, 외국인 대상 한방의료관광 상품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판매 함. 또한 웰니스 연관산업 확대 및 선진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주요 특례 : 치유관광산업육성 특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상품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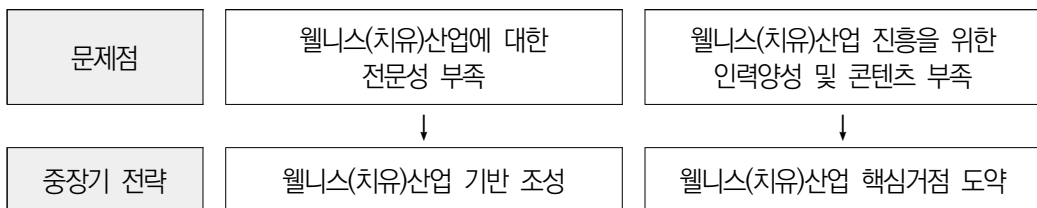
[그림 2-1] 전북자치도 특화 치유관광 테마 도출



□ 웰니스(치유) 산업 핵심거점 도약

- 웰니스 산업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식물교감·동물교감치유 거점 육성, 해양치유 산업 육성, 건강음식 활성화, 전통무예 태권치유 브랜딩, 농촌체험 힐링 촌캉스 육성, 전통가옥 힐링스테이 네트워크 등으로 발전시킴
- 웰니스 산업 연계/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웰니스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연계, 의료관광 고도화 필요
 - 전북 치유형 연수 네트워크 구축, 웰워케이션 치유단지 네트워크 구축, 전북 도보여행길 치유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 전북의 주요 교통거점(기차역·터미널 등)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번화가), 전북형 치유관광지(재단 선정 사업)를 중심으로 시·군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함
 - 웰니스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 전북형 특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구상
- 주요 특례 : 전북형 특화 웰니스(치유) 광역벨트 지원에 관한 특례

[표 2-9] 권역별 웰니스(치유)산업 진흥 부문 현황 및 전략



2.3. 생명경제 기반 구축

(1) 이민·생활인구 확대

□ 생활인구 확대

-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이동성 증가에 따른 생활유형을 반영하고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정주인구에 더하여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를 포함
- 귀농·귀촌 이주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농어촌 취업 및 창업지원, 정주여건 지원,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제공
-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역량강화 및 지역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적극적 실행 필요
- 주요 특례 :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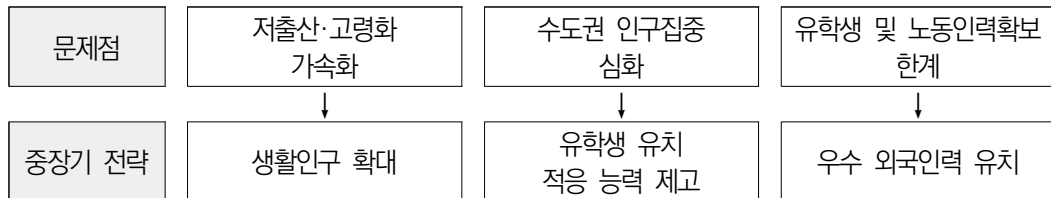
□ 유학생 유치·적응능력 제고

- 유학생의 유치 방안 마련은 물론, 입학 이후의 생활과 학업 수행, 취업 등을 통한 전북에서 정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도내 특화산업 및 육성분야에 적합하고,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외 인력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
 - 전북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명시된 스마트농생명, 미래 수송·기계, 첨단 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 등의 특화산업 중점 지원
- 특히, 제조업 등에서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통한 고등학생 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 시급
- 주요 특례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우수 외국인력 유치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필요
- 현재의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나,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이거나, 재고용이 보장된 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비전문취업(E-9) 비자로의 전환 등의 방안 마련 가능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지자를 발급하여 도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또한 도내 유학 졸업생들의 취업만이 아닌 창업기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정착 방안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확대, 생활 상담 제공 등 신속한 적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주요 특례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특례

[표 2-10] 이민·생활인구 확대 부문 현황 및 전략



(2) 인재거점 조성

□ 지역특화형 인재양성

-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혁신(예: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통해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이 필요
- 지역인재 특별전형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 가능

-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 및 취업 연계나 지역거주자 입학 기회 확대, 대학 내 학과 설립 및 정원 조정 등의 특례로 교육 관련 규제의 완화 가능
- 주요 특례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특례, 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 글로벌 국제교육기관

- 「새만금사업법」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법안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지원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지원 필요
- 글로벌 국제교육기관을 통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넘어서, 영재교육, 글로벌 교육, 과학창의, 농생명 바이오 분야 등 지역 특화 외국교육기관 모델 발굴 필요
- 새만금 지역의 중국 및 아시아권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국제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수요만이 아닌 아시아권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운영 방안 마련
- 주요 특례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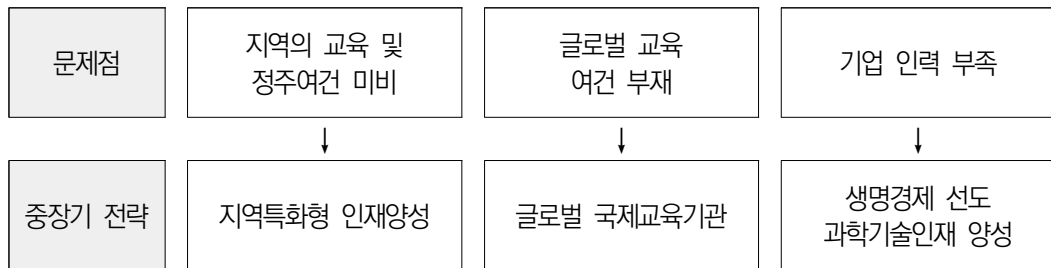
□ 생명경제 선도 과학기술인재 양성

- 생명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생명, 안전과 관련 농생명, 소재부품, 재생에너지 등에 특화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필요
-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을 통해 연구산업 진흥의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친환경, 스마트화, 탄소소재 및 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
- 도내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및 유통시장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통적인 금융투자 이외에 새로운 대체투

자(부동산개발, 재생에너지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생명경제와 접목한 자산운용 특화 발전 기대

- 주요 특례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특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금융교육의 실시 등 특례

[표 2-11] 인재거점 조성 부문 현황 및 전략



(3) 금융 및 투자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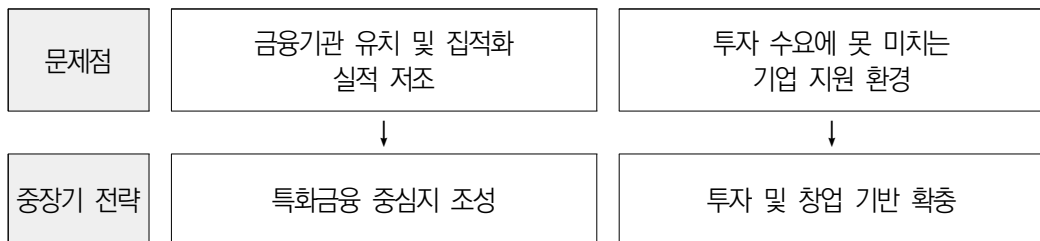
□ 특화금융 중심지 조성

- 생명경제 기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핀테크 벤처창업 육성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금융 인프라를 공공 주도하에 구축하고 연기금 특화 운용생태계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실현
-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금융 특례 필요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점진적으로 국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주요 특례 :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례, 핀테크 산업 육성 특례 등

□ 투자 및 창업 기반 확대

- 국내외 기업이 전북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적시에 토지를 공급하고 행·재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환경 조성
- 전북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공급을 관리하고 추가적인 수요 발생 시에 산업단지, 집적단지 등 토지 공급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
- 국가첨단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생명경제 기반 ICT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
- 주요 특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특례, 국유재산·공유재산 처분 기준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 ICT 벤처창업특구 지정 특례 등

[표 2-12] 금융 및 투자 촉진 부문 현황 및 전략



(4) 글로벌 SOC 구축

□ 국제노선 및 개발권한 이양

- 국내·외 다양한 항공노선 및 많은 정기편 확보를 통해 전북 거점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권한 위임
- 새만금메가시티 및 국제협력단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를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및 일방향 항공자유 공항지정 특례 필요
- 주요 특례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국가 간 항공기운항횟수, 새만금 국제공항 우

선 배분 등) 및 일방향 항공자유 공항 지정 특례

□ 광역연계 인프라 및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인구 50만 이상,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여 광역적 교통관리 필요하므로 대도시권 지정을 통하여 광역교통 문제해결
- 광역교통시설 및 모빌리티 구축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을 통하여 교통서비스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례 필요
- 주요 특례 : 대도시권 지정 및 사업추진, 광역교통시설 지원, 환승센터 및 DRT 자율권 확대 등 특례

□ 국가주도의 인프라 건설 신뢰성 확보

- 전북은 산지로 이루어진 동부권의 지역 접근성 위주로 도로 투자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새만금 연계 지방도에 대한 집중투자가 어려움. 전북 동측의 낮은 접근성 해결과 새만금 연계 지방도 확충을 위하여 국가 중심의 전북형 인프라 투자 정책 필요
- 광역교통시설의 경우 국비를 30~70% 보조받더라도 대규모 건설비가 소요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건설사업 특성상 막대한 지방 재정부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인프라 투자 필요
- 주요 특례 : 새만금 연결 지방도 국비지원 및 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등 특례

[표 2-13] 글로벌 SOC 구축 부문 현황 및 전략

문제점	글로벌 관문 인프라 전무	거점간 광역교통 연계성 부족	지방 재정투자 한계
	↓	↓	↓
중장기 전략	국제노선 및 개발권한 이양	광역연계 인프라 및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국가 주도의 인프라 건설 신뢰성 확보

2.4. 도민행복 증진

(1)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 차별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광역 단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실적 등 전산자료 기반의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23년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지침 개정안: (광역 역할확대) 광역(사도)에서 직접 사업 선정, 국토부는 사군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후 확정
- 도내 환승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주요 특례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 지역계층 간 정보 불균형 격차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문화시설 건립지원으로 접근·이용 편의성 등 각종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건축 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품 설치 대신 전북문화관광재단기금 적립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에서 스스로 스포츠클럽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필요
- 주요 특례 :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건축물 미술품 출연금의 지역 적립 특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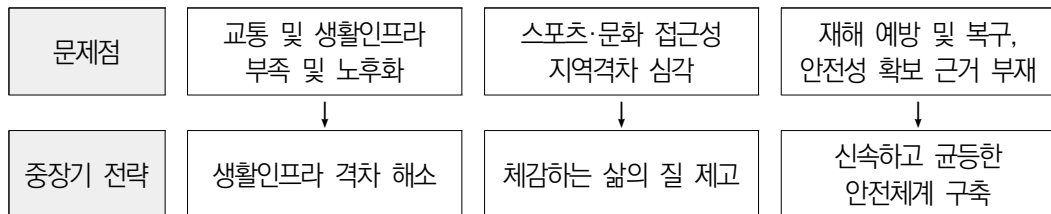
□ 안전체계 구축

- 도지사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신

속한 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지원방법 및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여 기업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지 않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도민에게 불필요한 규제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특정공사, 생활소음 등의 규제기준 및 관리범위를 도 조례로 위임하여 세부적 관리 근거 마련
- 시·군-소방본부 간 협조체제 구성으로 소화전 설치계획 수립방안 마련하여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1마을 1소화전 설치 통해 균등한 도민 안전 서비스 제공
- 주요 특례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소음 진동 관리 등 특례,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특례

[표 2-14]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부문 현황 및 전략



(2) 필수 의료·복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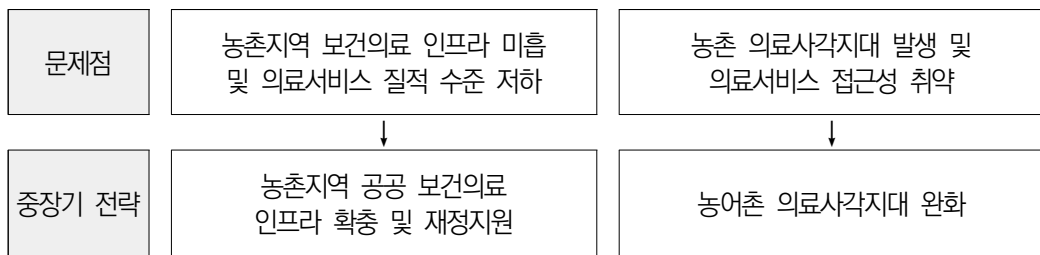
□ 농촌지역 공공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형 보건의료기관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재정지원 체계 개편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주요 특례 :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 인프라 확충, 농촌의료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편

□ **원격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촌 의료사각지대 완화**

- 전북의 도농 보건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 농어촌지역 원격의료 시범지구 지정 운영
-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련 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북을 원격의료 활성화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시장성 견인
- 원격의료 시범지역 지정운영을 통해서 ICT기반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의료 기기 및 장비 운영 테스트베드 구축
- 주요 특례 : 농어촌지역 비대면 원격의료 시범운영, 농어촌 지역 원격진료 기반 구축, 농어촌 원격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표 2-15] 필수의료복지체계 구축 부문 현황 및 전략



(3) **생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 **지역 상권 활성화**

-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생산, 소비가 선순환되는 생명경제 생태계 구현
- 전북 자체적으로 점포 및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 전북 내에 다수의 지자체 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할 경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행·지원 범위와 규모 권한 확보

- 주요 특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특례,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및 유통 특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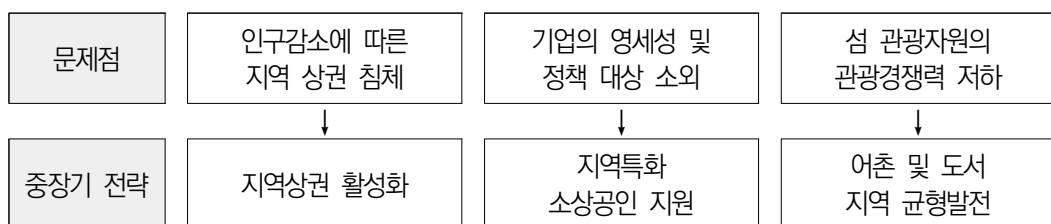
□ 지역특화 소상공인 지원

- 지역특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소상공인 집적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권한 및 재정지원(국비 및 지방비) 확보
- 전북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에 한정하여 타겟팅 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및 조세의 조정 등에 관한 권한 확보
- 타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차별화
- 주요 특례 :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특례, 지역특화 중소기업 정의와 범위 특례, 사회적기업 지원 특례 등

□ 어촌 및 도서 지역 균형발전

- ‘제5차 섬종합개발계획’(2028~2037년)에 6개 섬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근거 확보
- 고군산군도 소재 연륙 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주요 특례 : 전북 섬 제외 예정지역 특례 등

[표 2-16] 지역특화발전 민생경제 활력 부문 현황 및 전략



(4)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 생명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생태자원 관리권한 강화

-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제 등 핵심정책 권한이양
 - 전북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안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통해 생명경제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도 및 시·군간 업무협력 강화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수질개선 대책 마련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친환경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한 강화
 -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 마련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통합관광지로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효과성 극대화 도모
 - 보호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과 자치권 향상, 도립공원 등의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생명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수질오염총량관리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등

□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선도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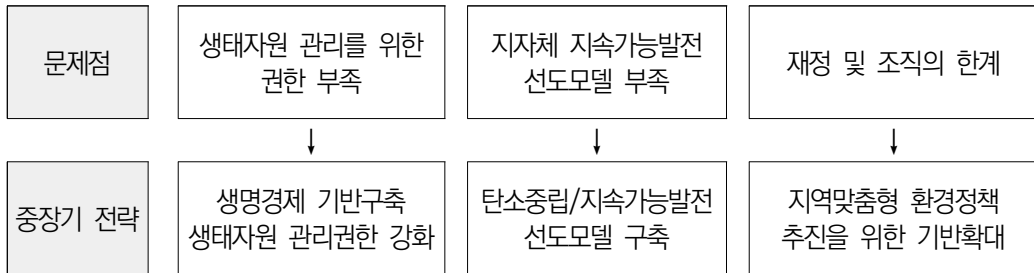
-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업과 사회전환프로그램 등을 연계·통합하여 특화된 선도모델 발굴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질적 탄소중립 이행주체로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녹색도시 정책모델 개발
-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으로 국제 생명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동 등 환경교육 거점 역할 수행
 -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전북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주요 특례 :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특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등

□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확대

- 부담금 징수비용, 기금조성 등 재원 확보
 -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 맞춤형 오염원(미세먼지, 폐수 등) 저감정책 추진으로 환경개선 효율성 증대
 - 탄소중립 등 관련 기금조성을 통한 맞춤형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 관련조직 및 기구 확보를 통한 환경정책 기반 확대
 - 생명경제 비전 실현 및 관련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한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도모
- 주요 특례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특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탄소중립 기금조성 특례 등

[표 2-17]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부문 현황 및 전략



2.5. 자치분권 강화

(1) 조직·인사권 확대

□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에 적합한 조직관리 재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임용 및 절차,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등 기구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북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 필요
- 특히 전북의 기존 주력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대전환을 유도하고, 이차전지, 수소 등 전북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 관리배제 특례 필요
- 주요 특례 : 자치조직권 특례(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국가공무원 정원 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 인사운영 유연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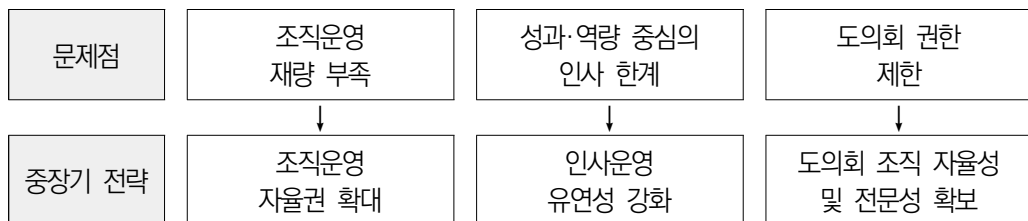
- 특별 승진·승급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한 요건을 전북 특성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확보
- 지역 특성 및 도정 현안을 반영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적재적소의 직위에 배치하여 탄력적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 운영
- 주요 특례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특별승급,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 도의회 조직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도의회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하기보다는 「전북 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에 근거해 전북 현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원 정수 확대 권한 확보

- 사례(「제주특별법」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의장이 행정기구 기능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도의회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위원 직급을 상향 조정 등 도의회 조직 구성의 자율권이 이양
 - 사례(「제주특별법」 제39조 정책연구위원) :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주요 특례 : 도의회 기구·정원 및 지원 전문인력 등 특례, 도의원 정수 특례 등

[표 2-18] 조직·인사권 확대 부문 현황 및 전략



(2) 지역주도 행정 강화

□ 자치단체 기능적 연계·통합

- 행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지방행정은 기존과 달리 더욱 유기적인 대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조적인 유연성과 개방성 확보 필요
- 광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전북이 광역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체제 변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연계 활성화
 - 「지방분권법」 제2조에 따라 지방행정 체제는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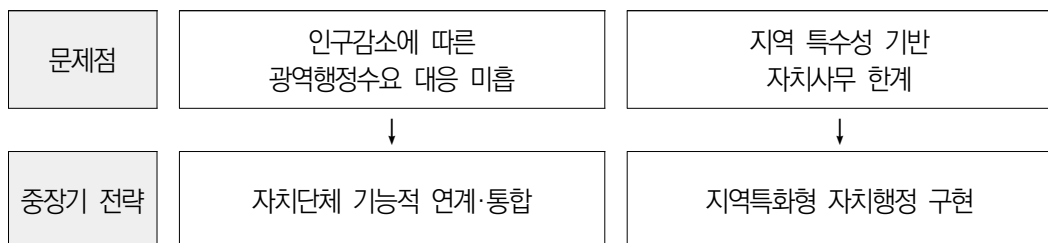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및 기능 배분을 의미

- 전북의 계층구조는 기존 중층제를 유지하고, 관할구역 또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능 배분의 특수성 추진
-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필요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 사례 :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부여
- 주요 특례 : 통합지방자치단체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구역 특례

□ 지역특화형 자치행정 구현

- 전북의 지역적 특수성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구현에 필요한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촉진
- 전북의 행정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시 효율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무이관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위상에 부합하는 광역과 기초 사무의 효율적 배분
- 주요 특례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특례, 시군 특례부여 및 지원 등

[표 2-19] 지역주도 행정 강화 부문 현황 및 전략



(3) 지속가능 재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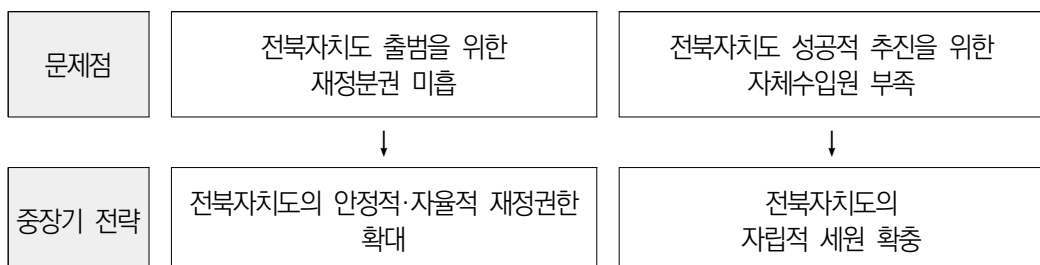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자율적 재정권한 확대

- 도민의 행정수요 증가 및 특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북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권한을 확대 필요
- 전북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지방분권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협력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하고 국가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국가지원 특례를 통한 재정 지원 필요
- 주요 특례 : 보통교부세 증액 특례,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시범사업, 테스트베드) 등

□ 전북자치도의 자립적 세원 확충

- 지방세제 분야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감면 등과 관련된 재정 자주권을 확대하여 전북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용 지원
- 전북의 지역발전 추진 및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창출과 더불어 특례 기반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상향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 주요 특례 : 지방세 자주권 확대 특례(시행령·부령→도 조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례(시행령→도 조례) 등

[표 2-20] 지속가능 재정 확보 부문 현황 및 전략



(4) 교육자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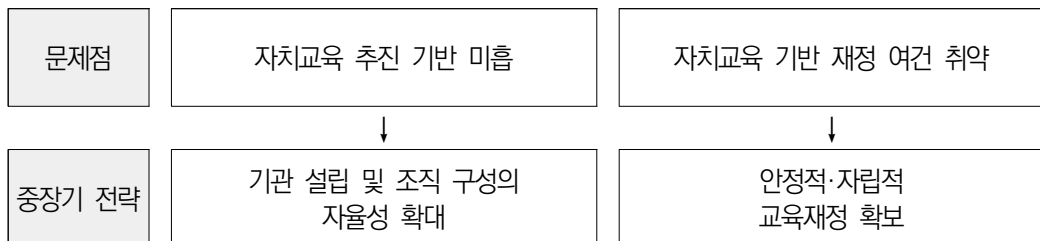
□ 기관 설립 및 조직 구성의 자율성 확대

- 전북 학교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규모에 적절한 교원을 배치하고 지역의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설립의 자율성 확대
-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교육의 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의 자율성 추진
- 주요 특례 :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일반구), 공립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설치 특례, 정원책정(3급 이상) 특례 등

□ 안정적·자율적 교육재정 확보

- 전북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재정권 확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교육재정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수요의 확보 추진
- 학교 이전 및 신증설 시 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완화 필요
- 주요 특례 : 보통교부세 증액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산정 범위 및 기준 완화 특례 등

[표 2-21] 교육자치 실현 부문 현황 및 전략



※ 20대 전략별 중장기 방향 총괄표

5대 목표	20대 전략	중장기 방향
생명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고도화	△ 농생명 산업구조 개선, △ R&D 기반 농생명자원 고도화 △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화	△ 의생명 소재 기술 확보, △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융복합산업 육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 주도적 수소경제 이행 여건 확보, △ 지역경제 환원적 에너지 자원 개발권 강화, △ 속도감 있는 시장 창출로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생명서비스 산업화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및 실버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전환산업 진흥	첨단소재 융복합화	△ 전북 특화자원기반 탄소소재 신기술 진흥 강화,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완성, △ 첨단소재 순환이용 경제생태계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 신소재 기반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 강화, △ 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화
	국제문화산업 거점	△ 케이문화융합산업 기반 구축, △ 케이문화 강소·스타기업 육성 △ 케이문화산업의 국제거점 조성
	웰니스산업 진흥	△ 웰니스(치유)산업 기반 조성, △ 웰니스(치유) 산업 핵심거점 도약
생명경제 기반구축	이민·생활인구 확대	△ 생활인구 확대, △ 유학생 유치·적응능력 제고, △ 우수 외국인력 유치
	인재거점 조성	△ 지역특화형 인재양성, △ 글로벌 국제교육기관 △ 생명경제 선도 과학기술인재 양성
	금융 및 투자 촉진	△ 특화금융 중심지 조성, △ 투자 및 창업 기반 확대
	글로벌 SOC 구축	△ 국제노선 개발권한 이양, △ 광역연계 인프라,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국가주도의 인프라 건설 신뢰성 확보
도민행복 증진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 안전체계 구축
	필수 의료·복지체계 구축	△ 농촌지역 공공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 원격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촌 의료사각지대 완화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 지역 상권 활성화, △ 지역특화 소상공인 지원 △ 어촌 및 도서 지역 균형발전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 생명경제 기반구축 위한 생태자원 관리권한 강화, △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 △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추진 위한 기반 확대
자치분권 강화	조직·인사권 확대	△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 인사운영 유연성 강화 △ 도의회 조직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지역주도 행정 강화	△ 자치단체 기능적 연계·통합, △ 지역특화형 자치행정 구현
	지속가능 재정 확보	△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자율적 재정권한 확대 △ 전북자치도의 자립적 세원 확충
	교육자치 실현	△ 기관 설립 및 조직 구성의 자율성 확대 △ 안정적·자율적 교육재정 확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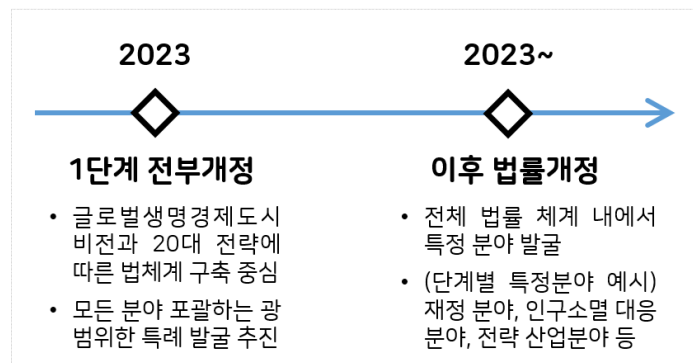
특례 발굴

3.1. 특례 발굴 방향

□ 법개정 고려 단계별 추진

- 제주자치도의 특별법 전부개정 사례를 보면 제1단계 개정에서는 특별법의 큰 틀을 구성하고 기본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집중하였고, 제2단계부터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음
- 「전북특별법」 역시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단계별로 주요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특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과 20대 전략을 각 편과 장과 절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별 주요 특례가 법률에 반영되도록 특례를 발굴함. 따라서 전략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특례를 발굴하여 전부개정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함
- 1단계 전부개정 이후에는 특정 분야, 특정 성과에 집중하여 특례를 발굴하는 방식을 추진함. 예를 들어, 2차 개정에서는 재정 관련 특례를 집중 발굴(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하거나, 인구소멸 대응 특례를 집중하여 발굴하거나, 전북의 전략산업별 특례를 발굴하는 방식임

[그림 3-1] 단계별 특례 발굴 방향



□ 발굴 기준과 설득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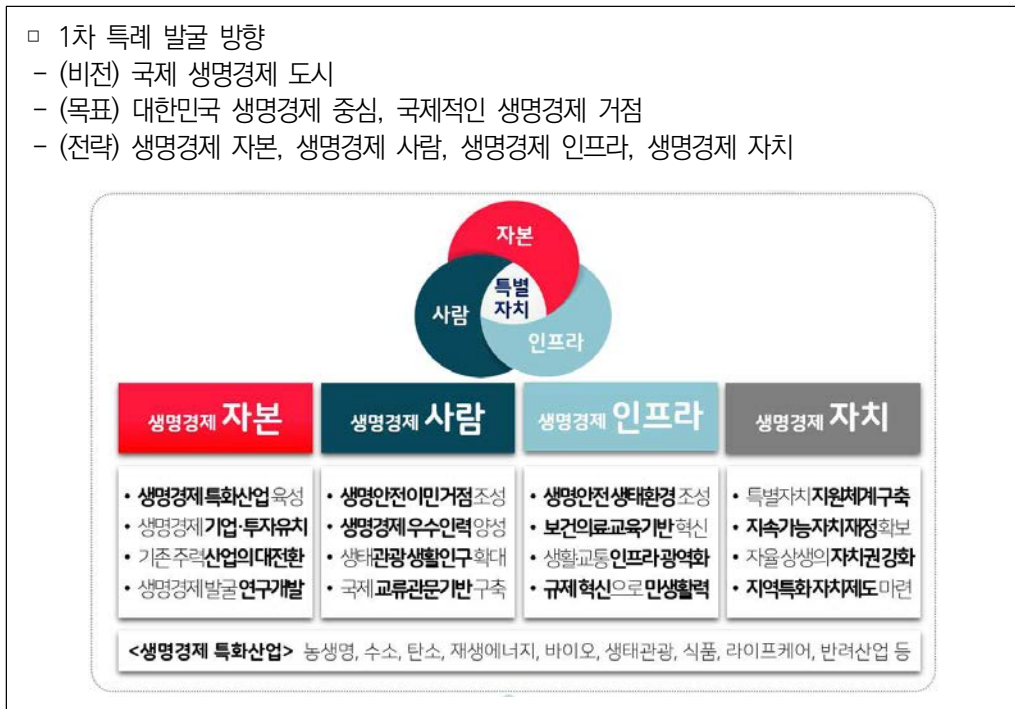
- (비전 연계) 전북자치도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특히 생명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특례를 발굴함. 생명경제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는 제외함
- (전북 특수성) 타 지역과 달리 전북만이 갖는 특수한 여건(경쟁력, 어려움, 특별한 자원, 전국 대표성 등)을 활용하여 전북만이 할 수 있는 고유성을 강조함
- (Zoning 전략) 전북자치도 내 특정 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권역을 설정하여 제한된 권역에서의 특례(규제 샌드박스 성격)를 발굴함
- (실험 지역) 국가가 추진하려는 신규 제도 및 사업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전북자치도를 설정하고, 신규 제도·사업 관련 특례를 발굴함
- (신규 제도) 국가 단위의 신규 제도를 전북의 특례로 발굴하여 제안함. 전북에서 신규 제도나 사업을 발굴하고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 후 전국화 하는 방식임

1	비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생명경제도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특례 <p>생명경제: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p>
2	전북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과 다른 전북만의 특수한 여건 관련 특례 <p>새만금(국가 추진사업), 농도(농생명 중심지역), 인구감소(지역소멸), 특정 분야의 전국 대표성(예, 자동차대체부품기업 수, 또는 초격차) 등</p>
3	조닝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내 특정 분야, 특정 권역으로 특례 한정 <p>현실적으로 도내 일부에 효과가 미치는 특례는 도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만으로 집중 권한 설정(zoning)</p>
4	실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신규제도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자치도 <p>리스크 검토 필요한 국가의 신규 제도를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자치도 설정: (예) 원격의료 등, 규제프리존 새만금 활용 등</p>
5	신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단위 신규제도를 전북 특례로 신규 제안 <p>신규제도를 전북에서 발굴, 국가 사업 제안(특례 통한 시범사업 후 전국화 방식) (예), 핀테크육성지구, 케이팝 관련 국제학교 등</p>

3.2. 특례 발굴의 경과

□ 1차 정리 : 144건 특례 (2023.1.31. 기준)

- 가안으로 설정된 비전인 ‘국제 생명경제 도시’(이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최종 확정)에 맞춰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도 실국을 중심으로 비전을 실현할 전략 방향(3+1, 자본, 사람, 인프라, 자치)별 세부 특례를 발굴함
- 이 단계에서의 특례는 전북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확정하기 위한 주요 특례로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함



- 전북지원위원회 참여 부처 관련 1차 발굴 특례 목록(국무조정실 1차 제출)

전략 분야		특례(안)	관련 부처
생명경제 자본	1-1. 재생에너지	1-1-01 태양광·풍력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 특례	산자부
		1-1-02 재생에너지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	산자부
		1-1-03 생명경제 에너지 전환 활성화 특례	산자부
		1-1-04 수소 연료전지공급시설 관련 특례	산자부
		1-1-05 수소 시범사업 관련 특례	산자부
		1-1-06 민간 그린데이터센터 관련 특례	산자부
	1-2.	1-2-01 새만금 국제 식량 중심지 조성 특례	농림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요약)

	농생명산업	1-2-02	전북자치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특례	농림부	
		1-2-03	전북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특례	산자부	
		1-2-04	전북자치도·해외 농업자원개발 특례	농림부	
		1-2-05	팻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농림부	
	1-3. 생명경제 특화산업	1-3-01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특례	과기부	
		1-3-02	지역특화 라이프케어산업 육성 특례	복지부 등	
		1-3-03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특례	환경부	
		1-3-04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특례	국토부	
		1-3-05	생명산업 전후방 생태계 강화 특례	산자부	
		1-3-06	생명경제 금융산업 육성 특례	금융위	
	1-4. 생명경제 산업기반	1-4-01	지역혁신 촉진 특례	과기부	
		1-4-02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특례	산자부 등	
		1-4-03	소프트웨어 진흥 특례	산자부	
		1-4-04	전북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특례	과기부 등	
		1-4-0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활성화 특례	중기부	
		1-4-06	파견 근로 유연화 특례	고용부	
	1-5. 외국인투자	1-5-01	생명경제 관련 외국인 투자 촉진 특례	산자부	
		1-5-02	생명경제 지원을 위한 관세/통관 특례	기재부 등	
		1-5-03	자금지원 등 특례	산자부 등	
		1-5-04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기재부	
		1-5-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타법을 적용 제외 특례	고용부 등	
		1-5-06	조세의 감면 특례	기재부 등	
		1-5-07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행안부 등	
		1-5-08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복지부	
		1-5-09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복지부 등	
		1-5-10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특례	과기부	
		1-5-11	외국어 서비스 제공 특례	과기부 등	
		1-5-12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례	기재부	
		1-5-13	공공투자 연계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행안부	
		1-5-14	국가 투자유치 보조금 특례	산자부	
	1-6. 새만금 전략 분야	1-6-01	새만금사업 통합계획 심의 특례	새만금청	
	생명경제 사람	2-1. 외국인주민	특례(안)		관련 부처
			2-1-01	장기체류자격 확대 방안 특례	법무부
			2-1-02	기술연수자격 확대 방안 특례	법무부
			2-1-03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특례	고용부
			2-1-04	외국인근로자 확대 방안 특례	고용부
			2-1-05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고용부
			2-1-06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	국토부 등
		2-1-07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특례	복지부	
		2-2. 생활인구	2-2-01	외국인 관광객 면세(Tax Free) 특례	기재부
			2-2-02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특례	문체부
			2-2-03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문체부
			2-2-04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 특례	산림청 등
			2-2-05	관광산업 진흥 특례	문체부
2-2-06			수상레저산업 등 진흥 특례	문체부	
2-2-07			산림문화·휴양 활성화 특례	산림청	
2-2-08			산림복지 활성화 특례	산림청	
2-2-09			생태관광지 육성 특례	환경부	

		2-2-10	자연공원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 특례	환경부
	2-3. 글로벌 우수인력	2-3-01	영어교육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교육부
		2-3-0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특례	교육부
		2-3-03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특례	교육부
	2-4. 자본·사람 국제관문 전략 분야	2-4-01	전북자치도 항공운송사업 육성 특례	국토부
		2-4-02	전북특별자치도 항만공사 설립 특례	국토부
			특례(안)	관련 부처
생명경제 인프라	3-1. 생태 보존	3-1-01	탄소중립(생명경제) 도시조성 특례	환경부
		3-1-02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용 활성화 특례	환경부 등
		3-1-03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산림청
		3-1-04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05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06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07	물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08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0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10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환경부
		3-1-11	환경계획의 수립·시행 특례	환경부
		3-1-12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특례	환경부
	3-2. 보건의료, 복지	3-2-01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특례	복지부
		3-2-02	의료에 관한 특례	복지부
		3-2-03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복지부
		3-2-04	농촌취약지역 원격의료 활성화 특례	복지부
		3-2-05	노인의료복지시설 적정공급량 조정 특례	복지부
		3-2-06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약처
		3-2-07	공중위생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복지부
		3-2-08	복지시설 통합설치 특례	복지부
		3-2-09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건인 특례	복지부
		3-2-1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자율성 보장 특례	복지부
		3-2-11	아동 복지에 관한 특례	복지부
		3-2-12	정신 건강에 관한 특례	복지부
		3-2-13	농촌지역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특례	복지부
		3-2-14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특례	고용부
	3-2-15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고용부	
	3-3. 광역 인프라	3-3-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례	국토부
		3-3-02	통합광역생활권 활성화 (광역철도) 특례	국토부
		3-3-0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국토부
		3-3-04	도시교통체계 관리 강화에 관한 특례	국토부
		3-3-05	교통시설(환승센터) 도입 특례	국토부
		3-3-06	대중교통 재정지원 특례	국토부
		3-3-07	교통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운영 특례	국토부
	3-4. 교육과 문화	3-4-01	유아/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교육부
		3-4-02	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부
3-4-03		외국어교육지원 특례	교육부	
3-4-04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	교육부	
3-4-05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부	
3-4-06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요약)

		3-4-07	남은 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	교육부	
		3-4-08	문화시설 설립과 운영 활성화 특례	문체부	
		3-4-09	문화산업 육성 특례	문체부	
	3-5. 농어업 진흥		3-5-01	전북자치도 군 급식품목지정 및 공급 특례	행안부
			3-5-02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특례	교육부
			3-5-03	전북자치도 한우산업 보호·육성 특례	농림부
			3-5-04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농림부
			3-5-05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림부
			3-5-06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림부
			3-5-07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림부
			3-5-08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 특례	농림부
			3-5-09	농지에 관한 특례	농림부
			3-5-10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특례	농림부
			3-5-11	수산업 발전에 관한 특례	해수부
			3-5-12	수산물 품질관리 특례	해수부
			3-5-13	어장 관리 특례	해수부
			3-5-14	수산자원 관리 특례	해수부
			3-5-15	낙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특례	해수부
			3-5-16	어촌·어항 개발과 관리 특례	해수부
	3-6. 지역개발		3-6-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국토부
			3-6-02	개발사업 시행 승인 특례	행안부
			3-6-03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례	행안부 등
			3-6-04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조치 특례	행안부 등
			3-6-05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 특례	행안부 등
			3-6-06	개발사업 토지수용 특례	행안부
			3-6-07	개발사업 토지 등의 업무 위탁 특례	행안부
			3-6-08	개발사업 공공시설 귀속 및 이주대책 특례	행안부
			3-6-09	개발사업 조세 감면 특례	기재부 등
			3-6-10	개발사업 부담금 등 감면 특례	국토부 등
			3-6-11	개발사업 토지매도인 지원 특례	행안부
			3-6-12	개발사업 개발사업 인근지역 지원 특례	행안부
		전략 분야	특례(안)		관련 부처
	생명경제 자치	4-1. 조직·인사	4-1-0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특례	행안부
			4-1-0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특례	행안부
			4-1-03	자치조직권 특례	행안부
			4-1-04	직위분류 특례	행안부
4-1-05			정원관리 특례	행안부	
4-2. 자치 재정		4-2-01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행안부	
		4-2-02	균특회계 계정 설치 특례	기재부	
		4-2-03	지방세 특례	행안부	
		4-2-04	세액 감면 특례	행안부	
		4-2-05	세율조정 특례	행안부	
		4-2-06	지방채 발행 특례	행안부	
		4-2-0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례	행안부	
4-3. 감사위원회		4-3-01	감사위원회 설치	행안부 등	

□ 2차 정리 : 전체 298조 법제화 (2023.3. 기준)

- 지원위원회 제출과 별도로, 「전북특별법」 공포와 동시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협력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14개 시군, 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655개 특례를 발굴함

- 기관별 특례 발굴 현황

도	시·군	교육청	의회
356건 (전북형 243건)	275건 (전북형 241건)	17건 (전북형 12건)	7건 (전북형 2건)

- 655건의(전북형 498건) 발굴 특례를 전문가 및 담당 부서 협의를 통하여, 불요 불급 특례를 정비하고 유사 특례를 병합하여 298조로 법제화함

- (미반영 고려 사항) ① 단순히 국비 지원 요청 특례, ② 권한 이양으로 국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특례, ③ 도의 권한 또는 재정을 시군에 이양·지원 요청 특례, ④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사회적 이슈 가능성이 큰 특례, ⑤ 부서 업무 관련 민원성 특례, ⑥ 권한 이양으로 이득은 적고 업무 과다 예상되는 특례, ⑦ 법과 상관없이 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특례 등

- 발굴된 특례 중에서 중점 특례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화함

- (선도 특례 선정과정) 특례발굴→실국 중점특례 선정→전문가 검토→중점특례 선정

① 4대 생명산업 육성	② 기존 산업의 대전환	③ 생명경제 기반 구축	④ 삶의 질 제고
스마트팜 등 농생명 특례	미래 모빌리티 실증지역 특례	이민 권한 광역 이양 특례	농산어촌 필수 의료·복지 특례
천연물신약 등 의생명산업 특례	수소·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	국제 교육환경 조성 특례	지역 맞춤형 규제 해소 특례
도민 환원 에너지산업 특례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특례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특례	민생경제 활성화 특례
안전 등 생명서비스산업 특례	K-POP·태권도시 조성 특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특례	
	농지·산림 스마트 활용 특례	글로벌 새만금 개발 특례	⑤ 자치분권의 강화
		글로벌 관문 트라이포트 특례	자치분권 실현 재정 특례
			지역소멸 대응 특례

● 2차 발굴·정리를 통해 법 체계화된 특례 목록

편 장 절	조
제1편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전북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북자치도의 설치, 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전북자치도의 사무의 위탁 특례,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전북자치도 지원위원의 설치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 새만금 농생명옹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새만금 농생명옹지 임대 대상자 및 임대기간,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지정, 국가 식품클러스터 특례, 식품기업 시험분석 지원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과 지원, 한우 산업 보호·육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저탄소 농산물인증 농업인 지원 등,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원,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종자산업 육성,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전북자치도 농어촌정비, 국제농생명협력허브 지정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천연물신약산업의 진흥, 감염병연구병원 지정, 지역특화 라이프케어산업 육성, 동물용 의약품 시험·검사 지원,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흥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및 사업 투자 권한,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법 시범사업, 수소융합지구 지정 및 지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단지 지정 및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제4절 생명서비스 산업 진흥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육성,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운영,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단지의 조성,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기반시설 우선 지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펫푸드 산업 육성, 재난 예방 기관의 설립,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제2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폐배터리재활용인증센터 지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지정,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2절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친환경특수목적선 활성화, 항공우주산업 촉진,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지정, 드론 실증 시험구역 지정

	<p>제3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p> <p>K-POP 국제 교육특구 지정, K-문화산업융합특구 조성, 디지털 치료제 콘텐츠 시범 사업 실증,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태권도 특구 지정 및 운영, 국제 태권도 사관 학교(대학원대학) 설립, 태권도원 방문 비자 권한,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p>
	<p>제4절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지정</p> <p>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 등, 친환경 산악관광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인·허가 등의 의제, 친환경 산악관광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의 감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산림문화·휴양 특례, 산림복지 진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p>
	<p>제3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p>
	<p>제1절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p>
	<p>외국인의 영주자격, 외국인의 영주자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 비전문취업 비자, 방문취업 비자, 외국인유학생 비자,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비자, 생명경제 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생명경제 분야 외국인 파견 근로 유연화, 생명경제 국제 창업이민센터 지정·운영,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외국인 근로자 의료·복지 지원,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귀농인의 요건 완화 등,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농가주택 구입조건 완화</p>
	<p>제2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p>
	<p>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국제학교의 설립, 국제학교의 설립 자격, 국제학교의 설립 승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 국제학교의 운영 등, 다른 법률의 적용,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대학 학생정원 조정, 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p>
	<p>제3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p>
	<p>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생명경제 금융교육, 대체거래소 설립 및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취득 제한규제 완화, 부동산 투자 회사의 기업결합신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조세의 감면,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유치기업의 부담금 등의 감면, 가업상속 이전기업 조세의 감면, 전북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활용과 전기세 감면 등, 식품기업의 소득세법,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농공단지 지정 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 국가 IT창업특구 조성·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p>
	<p>제4절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p>
	<p>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일방향 항공자유 공항 지정, 항만공사 설립, 생명경제 지원을</p>

	<p>위한 관세·통관, 새만금 토지용도 및 활용 변경 권한, 새만금 연계 지방도 비용 지원,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지역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 새만금지역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p>
<p>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p>	
<p>제1장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p>	
	<p>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도시교통정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광역철도 범위 확대와 국비 추가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 환승센터 도입, 교통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버스 공영제 지원, 재난안전 관련 권한 이양, 재난관리의 국비지원,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재해구호협회 설립, 소음 진동 관리 등, 통합허가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점검 권한, 수도사업의 인가 권한 등,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심의절차 등, 도시공원 점용 허가 대상, 도시가스 공급 촉진, 문화시설 육성 등,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지역문화기금 기부금품 모집, 스포츠클럽 활성화</p>
<p>제2장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p>	
	<p>원격의료,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준,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 보건복지 교육 활성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허가대상 건축물 설치,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방법 및 절차, 119구조구급법, 교통안전시설 일원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p>
<p>제3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p>	
	<p>지역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도시형 소공인 지원,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의 형평성 확보, 사회적 기업 세제지원,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이전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지리적 표시제, 농어촌체합휴양마을사업의 「식품위생법」 특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시설물 운영, 산림용 종묘가격 산정, 어항 개발 및 관리 등, 어촌 개발 및 관리 등, 섬 제외 예정지역, 관리선의 사용과 제한 금지, 면허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낚시어선의 이용 등, 유아장의 지정 등, 마을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 수산물 품질관리 등, 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사업 심의, 고흥사랑기부금 모금, 산악벽지형 궤도설치 활성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 권한</p>
<p>제4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p>	
	<p>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자원순환 인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수변구역 해제, 섬진강유역 물관리 위원회 및 유역관리청 신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지방하천 유지관리, 블루카본 탄소뱅크 지역 설치,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산간지역 지상경계 결정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배출부과금, 물환경 보전을 위한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지방환경 분쟁조정 조정가액 상향</p>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형태,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배제, 직군·직렬의 구분,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및 별도정원, 지방소방학교장 임용권 등,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별승급,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결원보충,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도의회기구 및 정원 등,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인건비, 도의회의원의 정수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구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여권사무의 대행, 지방재정 정보화, 전북자치도의 행정소송 지휘, 청사 기준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국유재산 관리, 주민투표, 특례부여 및 지원, 감사위원회장 인사청문회,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기업의 협조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교육지원청 설치, 방송통신중·고 독립 설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입학전형의 지원, 지방교육 재정, 지방채 등의 발행, 학교신설 교부금, 정원 책정
제4장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지방세, 지방채 등의 발행, 개별소비세, 예비비 사용, 금강수계 용담호권역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운용·관리, 다목적댐 초과수익 환수 및 수익금 공개 등, 방사능 방재대책 특별 지원, 향만시설 사용료
제5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자치감사계획 등,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비밀 유지 의무, 감사 등에 관한 특례

□ 3차 정리 : 전체 232조 법제화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2023.8.30)

- 2차 정리를 통하여 법제화된 298건의 특례에 대하여 부처별 협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 법 전문가의 법 개정에서의 기준 협의, 선도 특례별 세미나 등을 거쳐 의원발의 전부개정안으로 23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률안을 확정함
- 232개조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023년 8월 30일에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로 발의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자치권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제2조(정의) 생명경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
제4조(국가의 책무) 지역역량 강화 입법·행정 조치, 행·재정 지원 노력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국가정책 협조, 조례 정비, 총리와 성과목표·평가 협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예외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정부 직할, 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지위
제8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행·재정상 특별지원,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제9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소관 사무, 법령 위임 사무 타 지자체 위탁 가능
제10조(전북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타 법령에서 도 인용 시 전북 포함 간주
제11조(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국토부장관, 전북자치도의 독자권역 설정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총리 소속 지원위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부처는 필요조치 시행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는 5년 이내로 기한 설정하여 재검토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제15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도지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림부장관에게 지정내용 통지
제16조(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도지사, 5개년 계획수립, 국가 재정지원
제17조(농생명지구 변경 및 해제 특례) 도지사, 농림부장관 협의거쳐 변경·해제. 도조례 근거
제18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 권한 도지사 위임, 농지분할 가능
제19조(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마련, 국가 행 재정적 지원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농생명지구 내 한정, 농림부 권한 도 이양, 농림부령 조례 위임
제21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식품기업,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스마트산지유통시설, 약용 작물 육성, 저탄소농산물 등 인증농산물 지원 등
제22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특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지원, 양봉 육성, 꿀벌 개체사육 제한,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보급
제23조(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책 마련, 국가 행 재정적 지원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민간육종단지 재산 수익매각,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제25조(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근로 유연화) 외국인 파견 근로 사항 대령 조례 위임
제26조(새만금 농생명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새만금 농생명융지 개발사항 협의, 협의회 구성
제27조(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산업진흥단지 간주
제28조(한우산업 보호·육성) 도 고품질 한우 J-카우 지정, 전담기관 지정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9조(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중심병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헬스케어특화지구 지정·운영 협약
제30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복지부 도내기관 협약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 대령 조례 위임,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허가·지정, 국가 행·재정 지원
제31조(원격의료 특례) 원격의료 기준·가능지역 도 지정, 행·재정 지원
제32조(감염병병원 설치 특례)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제33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 도 시책 마련, 국가 비용 지원
제34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특례) 도 시책 마련, 국가 행·재정 지원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5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도지사와 협의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 국가지원
제36조(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도지사와 협의로 그린수소특화단지 지정
제37조(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 에너지 특례) 분산에너지 규모기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조례 위임
제38조(신·재생에너지법 시범사업 특례) 산업부 보급사업 시범적으로 전북 별도 실시
제39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도 발전지구 지정, 불이익 받는 지역 행·재정 지원
제40조(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 산업부장관 권한 조례 위임, 이용 설비 설치 권고
제41조(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포함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42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정의) 용어 정의
제43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 복합단지 입지선정 및 지정고시, 국가산단으로 지정 요청, 국가 기반시설 지원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도지사 부처의견 반영, 진흥계획 수립
제45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연수기관 운영) 복지부 전문연수기관 운영
제46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진흥재단 설립, 예산지원, 재단의 기능
제47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재단 및 입주기관 지원
제48조(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도 시책 마련,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지원
제2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제49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위한 시책·마련, 행·재정지원
제50조(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도지사 시범사업 시행, 국토부 지원
제51조(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 특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배터리)
제2절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5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제5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여객화물 운송할 경우 도지사 허가, 국가의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제54조(새만금 무인동체 산업 육성 특례) 도 시책 마련, 종합실증사업 행·재정 지원
제55조(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특례) 도 교육기관 운영·지원, 철도산업정보센터 설치·운영, 행·재정 지원
제3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56조(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국가·도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행·재정 지

원, 공유재산 무상양여
제57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 도 설립·운영, 초·중·고 병설 또는 통합 가능, 케이팝학과 대학 전 문교원의 지원
제5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케이팝 국제학교 특별법 우선 적용
제59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자격) 설립 자격 기준 명시
제60조(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등) 설립 승인 및 운영사항 국제학교 기준 적용
제61조(케이팝 육성기업 지원) 국가 지원 정책 수립·시행, 행·재정 지원
제62조(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케이문화융합산업 정의, 진흥지구 지정, 간주규정, 계획수립,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제63조(케이문화융합산업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특례) 인력양성기관 지정 권한, 연구개발 주관 기관, 표준화 사업 권한 등
제64조(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기업 지원 특례)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 우수사업자 지정(간주규정), 부설연구소 인정 권한 등
제65조(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도 시책 마련·시행, 국가 행·재정 지원
제66조(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이스포츠 육상지원, 국가 재정지원
제67조(태권도 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도 특구지정, 특별법 우선 적용, 행·재정 지원
제68조(태권도원 방문 비자 특례) 도 요청 시 참여 외국인 사증 발급 기준 달리 정함
제69조(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치유·야간관광산업 시책 마련 및 국가 재정지원, 전통무예진흥 및 체험관광 시책 및 국가 재정지원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문체부 전북 국제회의도시 지정, 지원, 세부사항 조례 지정
제71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도 시책 마련·시행, 국가 행·재정 지원
제72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도 지정, 국가 행·재정 지원
제73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시군, 지정권자 승인으로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제74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도 지정, 대령·부령 조례위임
제4절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제75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도 지정·해제, 인구소멸 위기지역 우선 지정,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와 도의 필요 시책 마련, 절차 조례위임
제76조(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77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 특구 지정 시 각 개별법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구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제78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 등) 도지사는 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
제79조(친환경 산악관광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도지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 부여
제80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도지사 권한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제81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인·허가 등의 의제) 도지사의 계획 승인(변경)시, 인·허가 의제
제82조(친환경 산악관광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사업시행자 토지 수용(사용) 가능
제83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특구 내 친환경 사업 권한 도 이양
제84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의 감면) 특구 내 조세·부담금 감면 권한 도 추가
제85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비용 지원, 세부사항 조례위임
제86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보전산지 변경 또는 지정해 제 등 도지사 이양
제87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심의사항 추가
제88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자연휴양림·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도 이양

제3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이민·외국인근로자 및 생활인구 확대
제89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도지사 요청 시 도내 외국인의 체류 관련 요건 별도 지정
제90조(외국인유학생 특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등 관련사항 변경 요청 가능
제91조(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체류자격 부여, 부모 F-2 비자 발급
제92조(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 도 이민자격 부여 가능, 요건 도 조례 위임
제93조(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령·부령 조례 위임
제94조(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지원, 외국인 고용사항 대령·부령 조례 위임
제9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 도 지정, 조례위임, 국가 재정지원
제96조(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국가 지정, 자금 지원 교부
제97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정 기준, 지원사항 조례 지정
제2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98조(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과기부는 기술원 설립, 법률로 설립·운영
제99조(국제학교의 설립) 도 설립, 필요한 경우 학교 간 병설·통합 운영
제100조(국제학교의 설립 자격) 국가, 도, 도조례에 따른 법인
제101조(국제학교 설립승인) 설립요건 조례 규정, 교육감 협의 및 승인
제102조(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교육감 승인 후 위탁 운영
제103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자율성 보장, 학교 장 운영 사항 규정, 규칙 및 평가 조례위임, 학력 동등 인정, 불이익 금지
제104조(다른 법률의 적용) 학생 징계, 기록 등 유아, 초·중등 교육법 적용
제105조(국제학교 교원임용 등) 자격, 정원 등 기준 조례위임, 외국인 교원 임용, 특별수당 지급
제106조(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학교회계 교육감 적용, 법인회계 설립근거 법령 적용
제107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설립승인일 3주 내 등기
제108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 지도·감독, 재정지원, 폐쇄승인 등 제주도법 준용
제10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학교 설립 도교육감 승인, 외국대학 설립 승인
제110조(외국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도·시군 공유재산 무상양여 가능
제111조(대학 학생정원 조정 특례) 도·행정기관 장 협의 통해 대학 정원 조정
제3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112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금융위와 협의로 양성기관 지정, 금융위 재정 지원
제113조(생명경제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도 자금지원, 국가 자금지원
제114조(생명경제 금융교육 특례) 금융위에 사업제안 시 반영, 금융위 교육업무 도·교육기관 위탁
제115조(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핀테크 육성지구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심사 등
제116조(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특례, 로보 어드바이저 특례) 테스트베드센터 설치·운영 위탁
제117조(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새만금 내 투자회사 출자 한도·자산운용·투자 제한 해제, 부동산개발사업 통한 자산양수 시 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
제118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자체 재정자금 지원 규정 대령·부령 중 일부 조례 위임
제119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지정 권한, 인구감소지역 내로 한정, 대령 조례 위임
제120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해제권한, 대령 조례 위임
제121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현금지원 확대 (2030년까지 한시규정-부칙)
제12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과기부장관 도 협의 후 진흥단지 조성·지정
제123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특구면적 확대축소 시 도지사 신청으로 과기부장관 변경

제124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지정계획 수립, 개발계획 권한 도 이양, 지정제한 기준 조례 위임, 대령 이상 규모 산업단지 국가 지원
제125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도 승인
제126조(국가 IT창업특구 조성·운영 특례) 도 조성, 국가 행·재정 지원, 전담조직 설치
제4절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
제127조(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도 새만금 기본계획·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등
제128조(새만금 연결 지방도의 국도 지정 특례) 새만금 연결지방도 국도로 지정 및 우선 반영
제1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 특례) 도 공모 가능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
제130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포함 도시, 대광법상 '대도시권' 인정
제131조(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토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제132조(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도내 지방도 구간 조사·설계 장관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
제133조(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도내 지자체 부담 건설비용 국가 지원
제134조(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지자체 부담 건설비용 국가 추가 지원
제135조(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취약 지역 운영노선 수요응답형교통체계 도지사 지정
제136조(버스 공영제 지원 특례) 국가의 비용 지원
제137조(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조례 지정
제138조(소음 진동 관리 등 특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 관련사항 조례 위임
제13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 설립 타당성 도지사에게 이양, 세부사항 대령 조례 위임
제2장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
제140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응급의료 의료취약지 조례 지정
제141조(성장축진지역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특례) 국가 비용 지원
제142조(산재보험 시설 등 설치·운영 특례) 산재관련 시설 도내 우선 설치·운영
제143조(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특례) 시설 설치·운영 조례 위임, 국가 행·재정 지원
제14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도지사 권한 이양
제145조(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특례) 설치기준 조례 위임
제146조(화재안전취약지역에 관한 특례) 지원관련 사항 조례 위임
제147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대령·부령 조례 위임
제3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148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우선구매 요구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지정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국가 재정지원
제149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대령 조례 위임, 시범사업 시행, 국가 행·재정지원
제150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식재료 구매 조례 지정
제15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영업관련 대령·총리령 위임사항 조례로 위임
제152조(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 지정에 관한 특례) 연육도서의 개발대상 섬 기준 완화
제153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허가 권한·시험어업 승인 권한 도 이양, 조례 위임
제154조(관리선의 사용과 제한·금지 특례) 관리선 지정 권한, 대령 조례 위임
제155조(낙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낙시어선업 신고요건, 행정처분기준 대령 조례 위임
제156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유어장 지정기준, 관리·운영 등을 조례 위임
제157조(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특례) 점용사용료 도 배분비율 상향, 교부대상 확대

제158조(계약 방법에 대한 특례) 제한 기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제159조(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기업유치·투자촉진 사업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제160조(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특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대상·상한액 별도 적용
제161조(혁신도시 지정 신청) 도지사가 신청한 지역 혁신도시 지정 우선 검토
제162조(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가능
제4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163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국책 연계 시범사업·녹색성장사업 시행 시 행·재정적 지원
제164조(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등) 도지사 지정, 국가 행·재정적 지원
제165조(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도지사 기금 설치, 국비 지원
제166조(환경영향평가 관한 이양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 권한 도지사 이양
제167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168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169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170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
제171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
제171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
제171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
제17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특례) 도지사 이양
제173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해제·축소 권한 도지사 이양
제174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도내 징수된 부담금 50%를 징수비용으로 도내 교부
제175조(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등 특례) 도내 징수금 교부율 최대 50% 상향
제176조(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개선부담금 전액 징수비용으로 지급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177조(자치조직권 특례)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조례 위임
제178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인사교류 기준 조례 위임
제17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행정기구 설치·정원 기준 조례 위임
제180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승진요건 조례 위임
제181조(특별승급 특례) 승급기준 조례 위임
제182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지정·운영 사항 조례 위임
제18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도지사·도교육감 권한
제184조(도의회기구 및 정원 등 특례) 의회사무기구 설치·운영, 의회 공무원 정원기준, 조례 위임
제185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전문인력 기준, 의원 정수의 1/3 → 의원 정수 범위 내
제186조(도의회의원의 정수 특례) 비례대표:도의원정수 10%→20%, 도의원정수:시군 지역구 추가
제18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선거구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위임
제188조(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특례) 획정위원회 설치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89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도 시군 의견 들어 위원회 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 추가
제190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지방교부세·보조금 교부, 도 사무 대행 시 경비 부담
제191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등의 구역 특례) 폐지·설치 등 사항 도지사 승인 후 조례 지정
제192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특례) 도 이관사항 지원위 심의 요청, 심의 후 공고
제193조(주민투표 특례) 실시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총수 1/20→1/30)
제19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예산편성 과정 공모방식 등 주민 참여, 기준 조례 위임
제195조(특례부여 및 지원) 시군 도지사와 협의 후 행안부장관에게 특례 요청, 도 행·재정 지원

제196조(사회협약)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지원
제197조(해외협력) 외국 지자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 상호협력·교류
제198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업무협조 및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제199조(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일반구 관할구역 교육지원청 설치
제200조(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교육감 설치
제20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신청서 제출, 지정 취소 권한 도교육감 이양
제202조(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공공기관 채용 시 일정 비율 채용 의무
제203조(지방교육 재정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25%추가 보정
제204조(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도조례
제205조(정원 책정 특례) 행정기구와 정원 책정 권한, 도교육감 이양
제20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교직원 정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도교육감 이양
제20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도교육감에 이양
제208조(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학교설립 기준, 취학의무, 학교 통합운영 등 도교육감에 이양
제209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4장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
제210조(지방교부세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25% 추가 보정
제21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별도 계정 설치
제212조(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특례) 새만금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예타 면제
제213조(지방세 특례) 조세 기준, 지방세법·기본법·징수법·특례제한법 조례 위임
제214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안분기준 가중치 100분의 500 별도 적용
제5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제216조(감사위원장) 의회 동의로 지사 임명, 임기 3년
제2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행정사무 처리, 위원장 추천 지사 임명, 운영사항 조례
제218조(자치감사계획 등) 감사 전 계획 수립, 30일 전 통보, 필요 시 조치 요구
제219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도에 결과 보고(조치사항 포함)
제220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도 통보, 통보 후 징계·문책 금지 및 시효정지
제221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감사위원회 비밀유지, 신분보장, 임기보장
제222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정치운동 금지
제223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자치감사 대상 국가 감사 금지
제6편 보칙
제224조(청문)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해제, 인가·승인·등록·지정 취소
제225조(감독) 인가·승인·등록·지정 감독
제226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227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해 징수
제2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도인사위·감사위 위원 공무원 의제
제7편 벌칙
제229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비밀누설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230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법 위반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제231조(양벌규정)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행위자 외 그 법인·개인 처벌
제232조(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례 또는 시군 간 연계 특례가 전부개정안에 포함됨

❖ 권역별 주요 특례

- 중부도시권(전주, 익산, 완주) : 수소산업 육성, 탄소산업 육성, 금융산업 육성, 연구개발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등
- 서부권(군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 : 대체부품특화단지 조성,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종자생명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 동부권(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 활성화, 곤충산업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반려동물산업 등
- 새만금 :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육성, 이차전지특화단지 활성화,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새만금 고용특구 등

❖ 시군 간 연계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탄소산업 클러스터,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관광 벨트 등

[그림 3-2]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2023.8.30.)의 권역별 및 시군 연계 특례 현황



4

전북특별법 개정 대응

4.1. 전부개정 경과 및 내용

□ 전부개정 경과

- 전부개정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자(기간)	주요 내용
전북특별법 제정	2022.12.28	▶(28개 조문) 국회 통과 '22.12.28 / 공포 '23.1.17
비전 체계 설정	2023.1~2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5대 목표)
도-시군 MOU	2023.2.8	▶도-시군 특례발굴·제도개선·역량강화 협력 MOU
특례 발굴	2023.1~4	▶도, 시군, 교육청, 의회, 전문가 등 연합 - 비전 맞춰 3개월 만에 655개 특례 발굴 - 전북형 독자 특례 발굴(111개)
법 체계화	2023.4~8	▶우선순위 따라 통합·조정 및 법체계화 - 232개 조문(194개 제도개선과제) 마련 - 국조실 제출(6.8)
법안 발의	2023.8.30. 2023.9.27.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8.30, 한병도·정운천 案)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9.27, 윤준병 案)
설명 활동 I (부처 단계)	2023.4~10	▶26개 부처, 설득될 때까지 지속 방문(10회 이상) - 도 8차 활동 보고회, 지휘부 장차관 면담 건의 병행 ▶지역국회의원실과 부처 토론회 실시(9회)
국조실·행안부협업	2023.7~1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7.13) ▶도-국조실-행안부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9.6) ▶국조실(전북지원과) - 13개부처 조정회의(10.6~24) ▶행안부 주재, 23개 부처 협의상태 점검(10.31)
도민 결집	2023.9~11	▶100만 전북인 서명운동 전개(9.18~11.10) - 111만명 서명 확보(11.14, 11.16 국회 여야 전달) ▶연내 통과 염원 전북인 한마음대회(11.21, 국회)
국회 행안위 상정	2023.11.9	▶국회 행안위 전부개정법률안 상정(11.9)
설명 활동 II (국회 단계)	2023.11~12	▶지휘부 국회상주, 개별의원 설명 총력 - 공청회, 행안위심사, 법사위 등 단계별 대응
행안위 법안1소위 (공청회, 심사)	2023.11. 15 2023.11. 22	▶행안위 공청회 대응(11.15)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 현장 대응(11.22)
행안위 전체회의	2023.11.23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11.23. 09:30)
법사위 의결	2023.12.7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8	▶국회 본회의 통과: 131개 조문 333개 특례

□ 전부개정 법률의 체계

- 12월 7일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은 7편 13장 9절로 구성됨

(생명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주요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농어촌 정비
▶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식품·바이오, 민간육종단지·종자클러스터, 스마트산자유통시설, 특용작물, 저탄소농산물·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 등 인증농산물 생산·유통 등)	
▶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 한우산업의 보호·육성
▶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 동물용의약품·바이오융복합산업 진흥
▶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전환산업 진흥)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국제 문화관광거점 조성, 친환경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주요 특례」	
▶ 이차전지산업 진흥	▶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야간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 산림문화·휴양·복지
(생명경제 기반 구축)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주요 특례」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 대학 학생정원 권한 이양
▶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기관 자금지원
▶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 전북투자진흥지구·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운영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주요 특례」	
▶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	▶ 독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 지역중소기업 지원	▶ 학교 공공급식 등 지역산농산물 공급
▶ 수산종사산업 및 수산업 등 육성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자치권 강화)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자치 행정의 확대, 자치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실현, 감사위원회	
「주요 특례」	
▶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정	▶ 읍·면·동 구역 통폐합
▶ 자율학교 운영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산어촌 유학

□ 전부개정 법률의 주요 특징

- 첫째,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특례가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프론티어 전북자치도’라는 특징이 있음

프론티어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 금융산업육성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고용특구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이차전지산업 진흥 △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 둘째, 개별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인정받아 산업을 육성하는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임.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국가 지원 인정

△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 고령친화산업 △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 이차전지산업 △ 케이문화산업 △ 야간관광산업 △ 수상레저산업 △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

- 셋째, 다른 지역 특별법이 분권 특례가 핵심이라면 「전북특별법」은 산업 특례가 핵심으로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 특히 5대 핵심사업과 3대 기반구축이 주요 특례로 개발되어 전부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그림 4-1] 전북특별법의 5대 핵심 산업 3대 기반구축 특례

□ 전부개정 법률 131개조

조문 및 내용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자치권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제2조(정의) 생명경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
제4조(국가의 책무) 지역역량 강화 입법·행정 조치, 행·재정 지원 노력, 국가계획은 전북자치도 목적 고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국가정책 협조, 조례 정비, 총리와 성과목표·평가 협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예외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새만금사업이 조화롭게 추진 필요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정부 직할, 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지위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행·재정상 특별지원,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소관 사무, 법령 위임 사무 타 지자체 위탁 가능
제11조(전북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타 법령에서 도 인용 시 전북자치도 포함 간주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총리 소속 지원위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부처는 필요조치 시행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는 5년 이내로 기한 설정하여 재검토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종합계획의 수립·변경·폐지 시 도의회 승인 등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종합계획 심의사항, 위원 등 규정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 5개년 계획수립, 국가 재정지원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림부장관에게 지정내용 통지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권한 도지사 위임, 농지분할 가능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농생명지구 내 한정, 장과 권한 이양, 농림부령 조례 위임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식품기업,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스마트산자유통시설, 약용작물 육성, 저탄소농산물 인증농산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지원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지원, 양봉 육성, 꿀벌 개체사육 제한,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보급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민간육종단지 재산 수익매각
제25조(한우산업 보호·육성) 도 고품질 한우 고능력한우(J-카우) 지정, 전담기관 지정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연구개발·보건신기술 장려 및 보호·육성 시책 추진, 국책사업연계 시범사업, 연구개발 실시, 국가 행·재정 지원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도 시책 마련, 국가 비용 지원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도 시책 마련, 국가 행·재정 지원

제29조(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감염병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31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도 발전지구 지정, 불이익 받는 지역 행재정 지원
제32조(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이용, 이용설비 설치 권고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복합단지 입지선정 및 지정고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도지사 부처의견 반영하여 진흥계획 수립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연수기관 운영) 복지부 전문연수기관 운영, 산하 연구소 설치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진흥재단 설립, 예산지원, 재단의 기능 규정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재단 및 입주기관 행·재정 지원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도지사 이차전지 시책 시행, 국가 지원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대체부품 인증기관 취소 사유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도 시책 마련, 종합실증사업 행·재정 지원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외국인 학교 설립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진흥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기관 지정 권한, 교육 및 훈련 국가 예산지원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 문체부 장관에 추천 등
제46조(아간관광산업의 육성) 아간관광산업 시책 마련 및 국가 재정지원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문체부 전북 국제회의도시 지정, 행·재정 지원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도 시책 마련·시행, 국가 지원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도 지정, 국가 행·재정 지원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도 지정·해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개발계획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와 도의 필요 시책 마련, 절차 조례위임
제51조(진흥특구개발계획)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특구 활용 개발계획 수립
제52조(진흥특구 지정의 효과) 특구 지정 시 각 개별법의 지정·수립·변경·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도지사는 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 부여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도지사 권한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제56조(친환경 진흥특구 인·허가 등의 의제) 도지사의 계획 승인(변경)시, 인·허가 의제
제57조(진흥특구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특구 내 산악관광사업에 대한 권한 도 이양
제58조(진흥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비용 지원,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적용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도지사 권한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심의사항 추가
제6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자연휴양림·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을 도 이양
제62조(준공검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규정
제3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특구·지구 근무 외국인의 체류 관련 요건 별도 지정, 3년 한시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및 지원, 노동력 수급 및 근로자 직업 안정 지원기관 설치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도 지정, 조례위임, 행·재정적 지원
제66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정 기준, 지원사항 조례 지정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 장 협의 통해 대학 정원 조정, 국립학교 제외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 실시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도 자금지원, 도 요청 시 국가 행정지원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도민 금융역량 향상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융역량강화 시책 시행 등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핀테크 육성지구지정, 지원센터 설립(혁신금융서비스 컨설팅,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충족 확인 지원 등)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일정조건 충족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일반 청약 미제공, 도지사 지정 금융기관 1인당 주식한도 초과 등 규정 등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지정 권한, 절차 방법 등 도조례로 정함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지정에 따른 해제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 과기부장관에게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제안 (새만금사업지역 중 협의지역, 국가국가식품클러스터)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특구면적 확대·축소 시 도지사 신청으로 과기부장관 변경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관련 연구촉진 단지 조성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운영) 도 설치·운영, 국가 행정적 지원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 설립 타당성 도지사 이양, 세부사항 대령 조례 위임
제80조(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조례 지정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특례) 설치기준 조례 위임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에 관한 특례) 지원관련 사항 조례 위임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대령·부령 조례 위임, 공수의 위촉 사항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우선구매 요구 권한 도지사 이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시 국가 신속 추진
제85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지역산 농산물 우선 공급,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협의 등 조례 위임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영업관련 대령·총리령 위임사항 조례로 위임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허가 권한·시험어업 승인 권한 도 이양, 대령 부령 조례 위임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시험양식업 지정 권한, 대령 조례 위임
제89조(낙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낙시어선업 신고요건, 행정처분기준 대령 조례 위임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유어장 지정기준, 관리·운영 등을 조례 위임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국책 연계 시범사업·녹색성장사업 시행 시 행·재정적 지원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도지사 지정, 국가 행·재정적 지원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소규모 등) 협의 승인 권한 도지사 이양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도지사 권한 이양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각 지구 등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특례 부여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해제·축소 권한 도지사 이양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인사교류 기준 조례 위임
제100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승진요건 조례 위임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지정·운영 사항 조례 위임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도지사·도교육감 권한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도 시군의견 들어 위원회 건의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폐지·설치 등 사항 도지사 승인 후 조례 지정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도 이관사항 지원위에 심의 요청, 지원위 심의 후 공고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실시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총수 1/20→1/30)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예산편성 과정 공모방식 등 주민 참여, 기준 조례 위임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시군 도지사와의 협의 후 행안부장관에게 특례 요청, 도 행·재정 지원
제109조(사회협약)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지원
제110조(해외협력) 외국 지자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 상호협력·교류
제111조(국가공기기업의 협조) 업무협조 및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교직원 정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도교육감 이양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도교육감에 이양
제114조(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학교설립 기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취학의무, 학교 통합운영 등 도교육감에 이양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별도 계정 설치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 (직무상 독립) 자치감사 등 조례로 규정, 감사위원 7(위원장, 위원6-도2, 도의회2, 도교육감2)
제118조(감사위원장) 의회 동의로 지사 임명, 임기 3년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행정사무 처리, 위원장 추천 지사 임명, 운영사항 조례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감사 전 계획 수립, 30일 전 통보, 필요 시 조치 요구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도에 결과 보고(조치사항 포함)
제1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조사 개시·종료 10일 이내 도 통보, 통보 후 징계·문책 금지 및 시효정지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감사위원회 비밀유지, 신분보장, 임기보장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정치운동 금지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 해제, 인가·승인·등록·지정 취소
제126조(감독) 인가·승인·등록·지정 감독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해 징수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도인사위·감사위 위원 공무원 의제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비밀누설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131조(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부과

4.2. 전부개정 효과(미래상)

□ (경제) 기업유치 1,531개, 투자유치 53조 7천억, 일자리 12만개 창출

- 전북 내 산업단지 규모는 2014년 기준 128,092천㎡에서 2023년 기준 133,525천㎡으로 확대됨. 이는 연평균 0.46%씩 증가한 규모임. 전북 내의 산업단지 지정이 기존 추세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추가 유치된 기업은 2040년까지 284개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4-1] 전북 내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시설 분양 평균 면적(2014~2023)

구분	2014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전북 내 산업단지 지정 면적	128,092천㎡	133,525천㎡	0.46%
전북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분양면적	44,216천㎡	53,065천㎡	2.05%

-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이 지정되면 전북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비중이 증가하게 됨
- 특례를 통해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 면적의 2.5%씩 증가한다고 할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분양 면적의 50%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음

- 분양면적 : 53,065천㎡(2023년) → 80,745천㎡(2040년)

* 기존 연평균 분양면적의 2.5% 증가 전제

- (기업유치 효과)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토지 공급의 결과로 기업이 추가 유치되는데, 2040년까지 1,815개로 전망됨. 따라서 특례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는 284개이므로, 특례에 따른 추가 기업 유치 효과는 1,531개로* 추정됨

* 특례에 의한 토지 공급으로 추가 유치된 기업 1,815개(2040년) - 기존 산업단지 지정 추세에 따른 추가 기업 유치 284개(2040년) = 1,531개(2040년)

- 투자 기업 1개당 14천㎡의 부지 면적이 소요

- 토지 분양률은 2023년 전북 소재 산업단지 분양률 95% 적용

- (투자유치 효과)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가 적용되어 2040년까지 1,531개 기업이 추가로 유치될 경우, 53조7,03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 350.83억 원 × 특례 적용 유치 기업 1,531개

- (고용창출 효과)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가 적용되어 2040년까지 1,531개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일자리는 120,567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기업투자 1억 원당 고용 발생 규모 0.2245명 × 특례 적용 투자유치 53조7,030억 원

- (실질 GRDP 효과) 「전북특별법」의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특례 적용 고용창출 효과에 적용할 경우 특례에 따른 실질 GRDP는 12조7,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산업연구원(2022)이 추계한 전북의 실질 GRDP는 68조4,945억원(2040년)임. 이를 특례 실행에 따른 실질 GRDP 추정액을 더하면 총 81조2,746억원(연평균 2.4% 성장)* 될 것으로 추정됨¹⁾

- 실질 GRDP 변화 추정: (2021년) 50조3,982억원 → (2040년) 81조2,746억원(연평균 2.4% 성장)

* 68조4,945억(2040년, 산업연구원 추계) + 12조7,801억원(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1.06억×특례 적용 고용창출 효과 120,567명)

□ (인구) 국내·외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 증가

- 2022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70천명이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이후의 전북 인구는 1,600천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됨
- 「전북특별법」 특례(지구·특구·단지, 외국인근로자·생활인구, 인재양성, 기타 산업 육성 등)의 실행에 따른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종합하면 전북의 인구는 2040년 1,781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대비 11.3%(181,231명)가 증가한 수치임

1) 산업연구원(2022), 광역시도별 전력수요 전망을 위한 GRDP 및 산업구조 전망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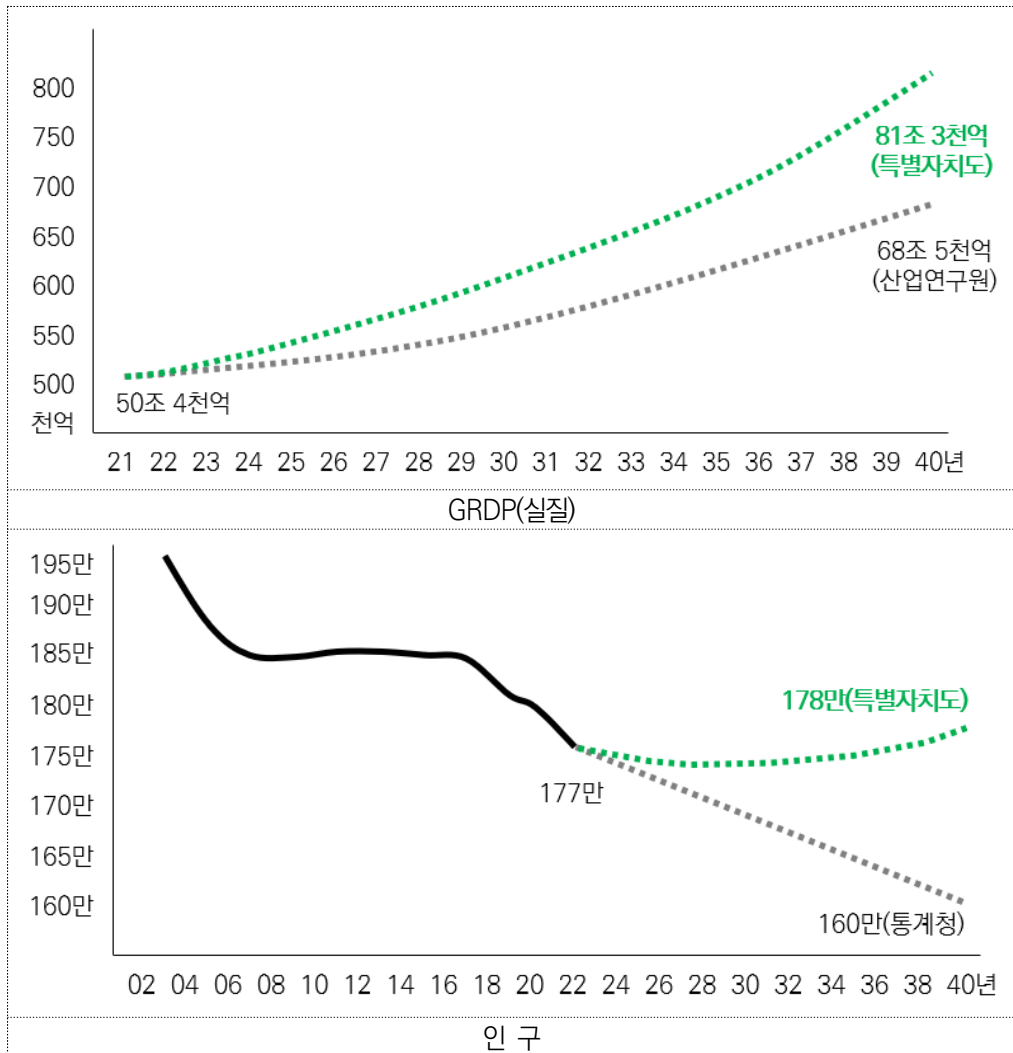
- 특례 적용에 따른 인구 유입 : 해외 유입 157,118명* + 기업 이주 24,113명**

* 해외 유입 : ① + ②

① 「출입국관리법」 특례(농생명산업지구) 적용 : 2040년 기준 농생명지구 내 종사자 196,534명(추정) × 45%(2022년 기준 외국인 비중(전북제조업 57.3%, 농축산업 30.0%)의 평균값 적용) = 88,440명

② 전북의 최근 외국인 증가 추세 및 기타 지구·특구 내 외국인 증가 전망 : 32,243명 (전북 외국인 증가 추세) × 2.13배(제주 사례의 10% 적용) = 68,678명

** 기업 이주(유치 기업 취업 및 이주) : 특례 적용 고용창출 효과 120,567명(2040년) × 20%(외부 유입율)



5

2단계 특례 발굴과 개정 전략

5.1. 전부개정 과정의 성과와 과제

(1) 특례 발굴의 성과

□ (발굴 과정) 신속한 대응과 통합적 특례발굴 체계 구축

- 「전북특별법」이 공포(2023.1.17.)된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필요 특례를 신속하게 발굴함**

* 1월 말 내 전북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로서 참여 부처 확정을 위한 주요 특례(안)와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 비전 체계를 요청

** 출연기관·시군·의회·교육청 협력체계, 1개월 만에 356건, 3개월 만에 655건 특례 발굴

□ (발굴 결과) 비전 연계 전북형 특례 발굴과 특수성 반영

- 특례 발굴에 있어 무엇보다 빠른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는 타지역 사례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및 전문가(비전위원회)와 협력하여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을 신속하게 확정하였고,* 비전체계(비전-목표-전략)에 부합하는 특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함**

- (전북자치도 비전위원회) 8개(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 2023년 3~4월 활동하였으며. 6월 13일(화)에 비전선포식을 개최

* 「전북특별법」이 공포된 후 1개월 이내에 전북자치도의 비전체계를 확정

** 비전(생명경제)에 따른 5대 전략목표에 맞춰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 정합성 확보



- 차등적 분권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의 특수성을 강조한 특례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제주·강원·세종특별법의 특례와 차별화되는 전북형 독자 특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과를 도출함
 -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中 전북형 112개(48.3%)
- 기존 주력산업을 비롯하여 전북도정의 핵심 현안과 연계하여 특례를 발굴함
 - * 주력산업(농생명, 에너지, 자동차 등), 핵심현안(인구감소, 새만금개발 등)
- 전북의 특수성(역사적·인문적·지역적)이* 반영된 특례별 논리를 개발함

[표 5-1] 발굴 특례에 대한 전북의 특수성 반영 논리 보강 방향

<p>1. 형평성(왜 전북에만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비 취약한 전북의 현실 설명(구체적 수치·데이터로 근거 제시) → 특례 권한을 통한 전북의 지역 경쟁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 강조 <p>2. 고유성(왜 타 특별자치시·도에 없는 권한을 전북자치도에 주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격차) 특례 통해 전북 강점을 더욱 살려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 강조 ○ (내셔널미니멈) 현실적으로 도내 일부에 효과가 미치는 특례는 도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만으로 집중 권한 설정(zoning) ○ (비전) 전북의 고유성(비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과 특례 연결 ○ (테스트베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분야의 경우, 전북이 'TEST BED'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 강조
--

(2) 개선 사항

□ 아젠다 방식의 통합형 특례 발굴

- 분야별 종합전략에 따라 필요 특례를 발굴하고 각 특례를 통합하여 아젠다 형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에 지구 지정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의제를 통합 명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례가 발굴되어야 함

□ 시군 간 연계 및 지역 균형 고려

- 시군·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비전 실현을 위한 선도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지역 간(특히 동부-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의 균형적 발굴이 요구됨. 예를 들어 산악관광진흥지구가 동부권 중심이라면 서해안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가칭) 해안관광진흥지구 특례 등을 발굴함

□ 전부개정 미반영 특례의 보완과 재정 특례 발굴

- 전부개정 과정에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부처 수용 과정에서 제외된 전부개정안 내 특례에 대하여 논리를 보강하여 다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이 명시된 조문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일부에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한 특례 부족을 지적하는바, 제주자치도의 JDC 사례처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특례가 특별히 발굴될 필요가 있음

□ 도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특례 발굴

- 특례 발굴 과정에서 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특례가 발굴되었으나 전북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 권한을 도로 이양하는 특례만 전부개정안에 반영됨. 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함

□ 비전과의 연계 강화, 이해 충돌 우려 특례의 배제 등

-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특례라는 점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완화 등 생명과 안전, 친환경 활용에 배치되는 특례는 제외해야 함
- 발굴 특례가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이해 충돌이 우려될 경우 특례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함

5.2. 2단계 추진 방향

□ 전략 분야별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

- 전략 분야 생태계 분석을 통해 발전 정책 등을 통합 특례로 도출함
 - 전략 분야 산업별 선도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례를 발굴

□ 정부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 수행 특례 발굴

-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시범사업이 필요한 정부 사업 또는 새로운 제도 등을 발굴하여 전북을 정부 사업과 제도의 법제화 및 사업 실용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 :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특례

□ 1차 개정에서 미수용된 특례의 논리 보강

- 1차 개정에서 불수용된 특례에 대한 논리 보완 후 특례를 수정함
 - (1차 발굴 경과) 시군 자체 발굴 총 457건
 - (2차 활용 방향) 개별 특례 반영이 아닌,* 발굴 특례를 묶어 아젠다형 특례를 설정하고 시군 발굴 특례를 포괄하는 방식 추진
 - * 부서 실무 중심 특례로 현안과 무관,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개정안 반영률이 높지 않음
 - (절차) 미반영 특례 검토 → 현안 아젠다 특례 구상 → 시군 발굴 특례 포함

□ 시군별 균형을 위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

- 특례가 14개 시군에 배치되었으나,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시군 간 균형을 염두에 둔 특례 발굴이 필요함. 시군 산림자원, 해양자원, 환경자원 등의 활용·발전에 필요한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발굴함
- 특히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특례가 아니라 시군 간,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구현과 시군 간 협력이 가능한 특례를 발굴함

□ (종합) 아젠다 중심의 특례 발굴

- 1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시군 발굴 특례와 도 발굴 특례, 부처 수용이 되지 않은 특례, 중요 영역이나 특례가 발굴되지 못한 현안, 생명경제 관련 핵심 분야 및 전북도정 핵심 현안 등을 종합하여 특례 아젠다를 발굴함
 - (예) 동부권 산악 활용 아젠다로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5.3. 전부개정 미반영 특례 대응

□ 부처 불수용에 따른 주요 특례 미반영

- 232개 조문의 전부개정안(2023.8.30 기준)에 담긴 다양한 특례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많았음. 다양한 신중검토 의견으로 자치행정 분야, 재정 분야 등 특례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 부처에서 반영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논리는 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② 전국적인 공통기준 적용, ③ 타 지자체의 재정손실 등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④ 유사특례 법안 계류 중, ⑤ 새만금 관련 특례의 「새만금법」에 규정 등임

[표 5-2] 발굴 특례 중 미반영 주요 특례

○ (자치행정 분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사유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조직권) :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조례 위임 ▶ (총액인건비 정원관리) : 행정기구 설치 정원 기준 조례 위임
○ (재정 분야)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 기준재정수요 약 25% 추가 보정, 지방세 감면액 축소항목 반영 제외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 국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교부, 도 사무대행 시 경비 부담 ▶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 지방세 안분기준 가중치 100분의 500 별도 적용
○ (SOC 분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처 제도개선 진행 중 사유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 지방도 구간 조사·설계 도지사 권한 이양 ▶ (환승센터 개발사업 지원) : 지자체 부담 건설비용 국가 추가 지원 ▶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 대중교통 어려운 지역의 운영노선 도지사 지정 ▶ (버스 공영제 지원) : 국가의 비용 지원
○ (새만금 연계 사업) 「새만금법」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 농생명용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별도의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 (법안 계류 중) 부처 협의를 마쳤으나, 관련 법안의 계류 사유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자동차 촉진) :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지사 권한 이양 ▶ (스마트농업 육성) : 농생명지구 내 IT를 결합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책 마련

5.4. 법 개정 방법 검토

□ 입법의 장·단점 비교

- 의원입법은 절차가 단순하여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론에 의한 입법, 전문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존재
- 정부입법은 부처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상당한 기간 동안 거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과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표 5-3]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비교

구분	의원입법	정부입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입법이 가능 •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이해상충 입법의 문제 • 정당의 당론에 따른 입법의 문제 • 전문성 결여 • 과도한 예산을 요하는 입법 추진 • 국민 의견수렴절차 부재 인한 불신 • 정부 부처간 갈등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 존재
소요기간	별도의 절차가 없어 법률안만 준비된다면 7일 이내에 발의 가능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 기본적으로 의원입법이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여, 이를 지향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입법과 병행이 필요함
 - 정부는 부처협의를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처협의를 규제심의회가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을 통하여 입법하는 것이 필요
 - 신속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원입법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제주도 추후 있을 제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검토
- 주민자치와 관련된 입법의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입법보다는 지역주민과 자치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원입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전북특별법 개정에 관한 입법 방향

- 많은 분야의 특례가 신속하게 「전북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특별자치법의 취지와 기존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 실효적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주민자치를 고려했을 때, 행정과 정치권 등 전북자치도에서 주체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특례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제주자치도는 정부입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에서 이후 법 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특히 포괄이양 등과 관련한 전부개정에 있어 의원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북특별법」 개정 방법은 단순히 소요기간의 문제보다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특례가 법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담길 수 있는가를 놓고 판단해야 함. 무조건적인 의원입법 추진보다 전북특별법에 담으려는 특례 유형과 내용에 따라 이원화된 전략, 즉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제주자치도의 경우 기존 법 개정에서는 정부입법을 통해 다양한 개별 특례를 반영하였으나, 7단계 이후 법 개정에서는 의원입법으로 권한의 포괄 이양을 추진할 전망
- 정부입법은 조세제한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 재정 관련 특례, 여러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여 다양한 부처협약이 필요한 특례,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기보다 행정과 관련된 조직·인사 등의 특례 등을 추진함
- 의원입법은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입법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특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규제 등이 급변하는 산업 분야의 특례, 단일 부처 특례로 신속한 부처 협약이 가능한 특례 등을 추진함

[표 5-4] 전북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법전략

구분	주요 내용
정부입법	○ 재정 관련 특례, 여러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여 다양한 부처협약이 필요한 특례,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기보다 행정과 관련된 조직·인사 등의 특례
의원입법	○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특례, 제도·규제 등이 급변하는 산업 분야 특례, 단일 부처 특례로 신속한 부처 협약이 가능한 특례 등

5.5. 중장기 전략으로서 차등적 분권제

□ 4개 시·도 공동 대응 방향

- 차등적 분권제(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정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획일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른바 자치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그 자치의 능력에 따라 분권화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특별자치도 실험과 지방자치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가 병존하고 있음
- 국외사례에서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전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권한은 별도로 구분하고 지방정부 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한해 권한의 이양이 이뤄졌음
- 따라서 추후 특별자치도별 특별법의 후속입법 과정에서는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단일한 행정기준을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권양이양금지 사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입법이 준비되고 있고 특별자치도별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행정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가 전국에 단일한 행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이양을 금지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도록 대강의 구획이라도 설정하는 논의가 국무조정실과 4개 시·도 공동으로 이뤄져야 함

□ 차등적 분권제의 중장기 방향성

- 차등적 분권제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제안된 대통령의 개헌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행정·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자치입법권만 외에 조직권 및 인사권을 포괄하는 행정권을, 그리고 나아가 자주재정권을 헌법적으로 실질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 것임

- 또한 ‘보충성의 원리’를 새로이 규정할 시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권한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앞선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영역은 지방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또는 위임 사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근거로 지방이 이들 두 사무를 주민 근거리 복지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우선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 (강기홍, 2018)
- 우선,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자치, 분권,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국가운영의 기본방향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안 제1조제3항)
- 2018년의 헌법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상정함. 나아가 지방의회의 조례를 법률로 보며, 사법부 구성 역시 자치단체 내 지방법원을 별도로 관념하고 있는 등, 지방정부를 연방제 국가 내 주권자로 인정하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 개정보다는 신헌법 제정에 가까움. 즉, 현행 헌법은 단일주권, 단일국가의 중앙정부가 행정권을 어떻게 분권하는가에 대한 체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전제 자체가 달라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음. 이는 당장 추진은 어렵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야 할 과제임
 - * (예시) 국가법령에 의한 자치사무 선점 배제, 국회와 지방의회 동격화, 지방의회의 입법 형성권 부여, 자치입법 조례로 자치단체 조직 및 사무 범위 등 설정

6

거버넌스와 홍보

6.1.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 기본 구상

-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참여 주체들의 유형에 따라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구분
- 대내적인 측면에서 전북자치도의 파트너십 대상은 행정기관,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이전 공공기관, 민간기관, 도민 등이며, 대외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십 대상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국회, 특별자치시·도로 구분 가능

[표 6-1] 전북자치도 거버넌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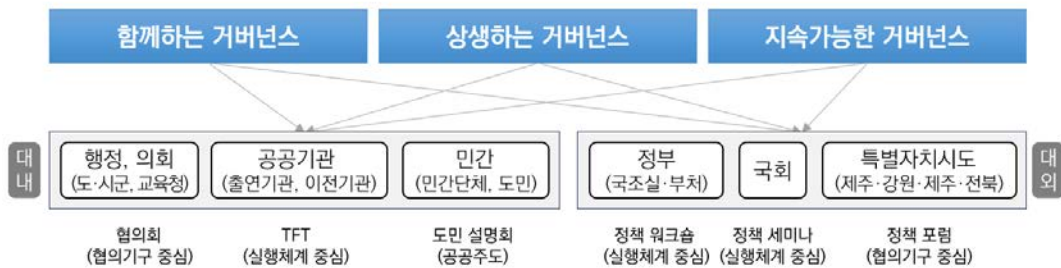
구분	대상
대내	전북자치도 추진단, 실국, 시군, 도의회,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이전공공기관, 민간기관, 도민
대외	국무조정실, 행안부 외 중앙부처, 국회,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강원)

- 거버넌스 구축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및 특별법 개정, 특별법 상의 특례를 활용한 사업 기획 및 추진, 특별자치도 대내외 홍보 및 위상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 참여 등이 주요 목적
- 거버넌스 구축 목적 고려시 특별자치도추진단 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스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상생하는' 시스템, 일회성보다는 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

□ 거버넌스 추진 전략

- 함께하는 거버넌스 : 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관, 도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특별자치도

-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분야별·계층별·기관별 주체들이 참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 **상생하는 거버넌스** : 특정 집단을 넘어 참여 주체들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고 이해관계가 충족되어 협치가 이루어지는 특별자치도
 - 참여 주체들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특례 발굴과 특례들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가 창출되는 상생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환류시스템이 구축되는 특별자치도
 - 지역의 문제와 현안들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의제가 창출될 수 있는 특례가 발굴되고 발굴 특례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 도-의회 협력

- 개요 : 대내외 협력 주체 간 논의를 통해 발굴된 특례 및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조례 제·개정 등 전북자치도 제도 정비
- 대상 :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 및 추진단, 전북자치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
- 운영 : 특례 및 규제개선 발굴 사항에 대해 상시 협력
- 절차 : 도 실국과 도의회 상임위 협의 → 특례 및 규제개선 사항 취합(추진단) → 추진단과 도의회 협의(입법 내용 도출) →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의회)
- 내용 : 도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원의 정원 기준,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 도-교육청 협력

- 개요 : 자치교육 실현을 위한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특례 적용을 통한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 추진
- 대상 :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및 추진단, 전북자치도 교육청(시군 교육청), 도내 대학
- 운영 : 특례 및 규제개선 발굴 사항 도출을 위한 자치교육 협의회 구성·운영
- 절차 : 자치교육 협의회 구성(도·교육청·대학·유관기관) → 시군 교육청 및 대학 의견 수렴 → 특례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 → 논리 개발(필요성 및 타당성 등)
- 내용 : 교육지원청 설치, 방송통신학교 설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방교육 재정, 학교신설 교부금 등

□ 도-시군 협력

- 개요 : 전북자치도 실국과 시군 사업부서 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특례 기반 사업추진과 2단계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대상 : 전북자치도 실국 및 추진단, 시군 기획부서 및 국·과
- 운영 : 분기별 추진(도 실국-시군 사업부서), 반기별 추진(도 추진단, 시군 기획부서)
- 절차 : 시군별 특례 및 제도개선 발굴(시군) → 도 실국과 시군 사업부서 간 협의 진행(도 실국) → 도·시군 협의회 개최(추진단) → 정책 반영
- 내용 : 전부개정 법률에 반영된 특례를 활용한 도 및 시군의 사업 기획 및 추진 사항, 2단계 지역특화형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할 권한 등에 대한 논의

□ 시군 권한 이양 검토

- 개요 : 전북특별법에 포함된 333개 특례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확보하게 될 특례 중 시군으로 이양할 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사무 이양

과 전북자치도 권한 이양으로 구분해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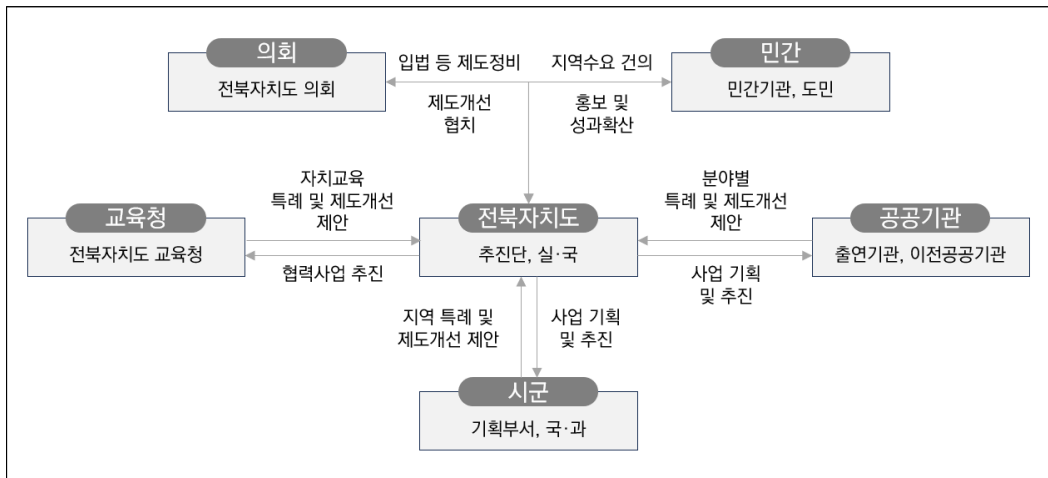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사무 이양
 - 대상 : 해당 시군 의회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규약으로 정한 사항으로 해당 시군들이 특정한 행정사무 등을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광역복지, 광역환경시설, 광역교통망, 광역생태축,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 문화관광권 등)
 - 내용 :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권, 조직·인사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
 - 설립 검토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군산·김제·부안),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 전북자치도 권한 시군 이양
 - 유형 : 전북자치도 조례 제·개정시 시군에 권한 위임, 전북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조례 제·개정시 시군에 권한 위임 : 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면적(특구, 지구, 단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단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도 실국 의견 청취 후 규정), ② 도 실국 의견을 청취 후 특례가 단일 시군에 해당되고, 파급효과 또한 단일 시군에 한정되는 내용, ③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과 관련된 사무, ④ 기타 시군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사항
 - 전북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 ① 특구·지구·단지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공고·열람 및 고시 등 단순 집행 성격의 사무, ② 조사 및 보존관리, 측정 등 현장과 밀접한 사무, ③ 각종 신고처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대민 사무, ④ 기타 국가 또는 도 차원의 공통된 처리를 요하지 않으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하거나 시군이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

□ 도-공공기관 협력

- 개요 : 도 실국과 도내 출자·출연기관, 도내 이전 공공기관 등과 TFT를 구성해 특례 발굴 및 논리개발, 분야별 사업계획 논의
- 대상 : 전북자치도 실국, 16개 출자·출연기관, 혁신도시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 국가기관 분원 등
- 운영 : 도 실국과 공공기관 간 자체 TFT 구성·운영(예: 농생명축산식품국-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 절차 : TFT 구성(도 실국) → 특례 발굴·보완 및 사업계획 논의(공공기관) → 특별법 개정안 반영 및 사업 구체화(도 실국)
- 내용 : 분야별 특례 발굴 및 타 협의체에서 발굴된 특례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 추진논리 개발, 특례 기반 핵심 사업 구체화



□ 4개 특별자치시·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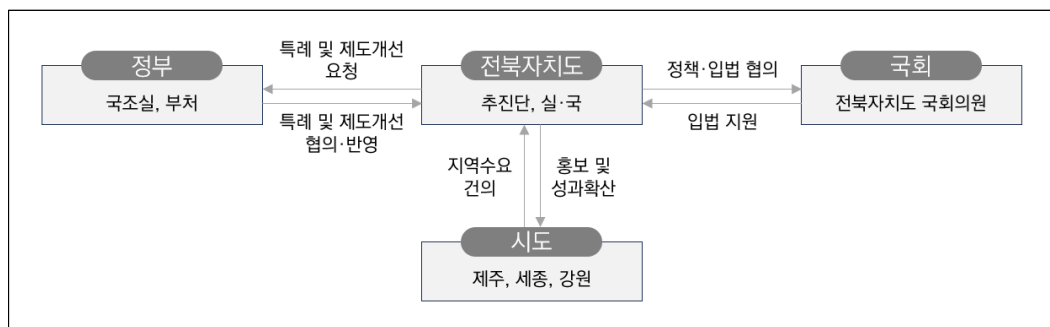
- 개요 : 전북자치도와 타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특례를 중심으로 포럼 개최
- 대상 : 전북자치도, 제주자치도, 세종자치시, 강원자치도
- 운영 : 실무협의회 개최(분기), 특별자치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시 정책포럼 개최(반기)
- 절차 : 제도개선 등 공동의제 발굴(실무협의회) → 공동의제에 대한 조사연구(시도 연구원) → 협의 안건 도출(정책포럼) → 공동 건의 및 대응
- 내용 : 특별자치시도 공통 관심사항 특례(재정분권 등) 발굴 및 공동 건의, ②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험과 성과 공유

□ 중앙정부 협력

- 개요 : 전북자치도가 행안부 등 부처를 대상으로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입법 반영을 위한 국조실(전북 지원위원회)과의 워크숍 개최
- 대상 : 전북자치도 추진단-국조실 및 행안부, 도 실국-중앙부처
- 운영 : 반기별 정책 워크숍 추진(도 추진단-국조실, 필요시 행안부와 워크숍 개최), 수시 협의(도 실국-중앙부처)
- 절차 :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전북자치도) → 사전 협의(국조실 전북지원과) → 정책 세미나(국회)
- 내용 : ①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및 계획, ② 발굴 특례 및 활용 방안 등

□ 국회 협력

- 개요 : 발굴 특례 및 특례를 활용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처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을 유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 대상 : 도내 국회의원(주관), 전북자치도 추진단, 특례 및 사업 관련 중앙 부처
- 운영 : 년 1회 정책 세미나 개최(법안 개정 시기 고려)
- 절차 : 특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전북자치도) → 정책 세미나 개최(국회·전북자치도) → 워크숍 개최(국조실) → 부처 협의(국조실·전북자치도)
- 내용 : ① 발굴 특례 및 입법 계획, ② 특례를 활용한 정책 및 사업 추진 논리 강화



6.2. 전북자치도 관련 언론보도 분석²⁾

□ 전북도의 지속적인 홍보 효과

- 전북자치도 관련 언론보도의 첫 번째 특징은 분석 기간 전체적으로 발생보도(홍보 및 기록)가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중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언론보도가 급증하는 데, 전북자치도 보도에서도 이런 경향과 더불어 특별 이벤트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도의 언론을 통한 전북자치도의 홍보 노력이 그만큼 수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 자체 기획기사가 20%를 넘었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임. 전북일보의 경우 21.42%, 전주KBS는 27.63%로 나타났음
- 중요 이벤트(특별법 공포, 「전북특별법」 발의, 출범 등) 시기에 특히 기획기사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뜻하며, 한편으로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함. 또한 단순 홍보 및 기록 기사가 아니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도에서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음
- 셋째, 전북을 제외한 중앙 및 타 지역 언론은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 2024년 1월에 보도건 수가 485건으로 많았는데, 이는 출범식과 출범식에 있었던 논란에 대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임. 즉 중앙 또는 타지역 언론은 전북자치도에 대해 전국적 의제가 아닌 전북지역 의제로 국한해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향후 전북자치도 관련 언론 대응 방향

- 언론보도 경향을 보면 출범식 이후에 2월에 언론보도량이 급감하지 않는데 이는 도지사의 시군 설명회 보도가 많았기 때문임. 하지만 전부개정 및 출범식 등 대형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 향후 언론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분석 대상: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전주KBS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전북지역 언론사 3곳과 51개의 전국 종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방송사)

-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 이슈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안 제시를 함께 논의했듯이, 시기별, 대상별 아이টে을 발굴해 언론에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시행령 제정 관련 사항(시행령 개정의 어려움. 정치권과의 협력.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의미 등),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특례 실행계획(5대 산업, 3대 기반별 실행계획의 추진 경과, 단계별 내용 등을 연중으로 구상), 2단계 특례 발굴(주요 방향, 주요 특례, 시군 협력 특례, 주요 이슈(예, 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 등), 일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명칭 변경의 효과, 독자권역 설정의 효과 등) 등 주제를 선정하여 아이টে을 발굴함
 - 예를 들어, 전북자치도 출범 100일, 「전북특별법」 시행 100일 전, 2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333개 특례의 시행 추적, 전북자치도 출범 1년 등
- 또한, 전북언론과 중앙 등 타 지역 언론에 병행하여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전북언론에는 다양한 홍보아이টে을 찾아 연중으로 제공(주목할 만한 특례, 타 특자치도 성공 사례, 특례 발굴 등)하고, 중앙 또는 전국 언론, 타 지역 언론에는 거시적 관점의 아이টে을 발굴하여 제공(타 지역 연계 특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 전국구 인물 활용 칼럼 등 특별자치도를 전국적(또는 특정 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콘텐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전북에서 특례를 통해 실험하는 새로운 제도(예, 국제케이팝학교, 핀테크육성지구, 리츠(부동산간접투자) 특례)의 의의와 전국적 영향 등을 정리 제공. 지방분권의 중장기 전략으로서 차등적 분권제 등의 실험장인 전북. 중고등학생 유학생 비자 등 전북이 특례로 담으려는 새로운 이민사회의 실험 등
- 기존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단발성(일회성) 기사인 점을 고려해 중·장기 연재가 가능한 홍보물 기획도 필요함. 이와 더불어 신문의 경우 사설 등 관련 칼럼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기자뿐 아니라 논설위원 등 칼럼 필진에 대한 홍보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북자치도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를 가장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특례에 따른 지역발전 성공사례, 특히 지역주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6.3. 도민 인식 제고 및 브랜딩 전략

(1) 도민인식 제고 방안

□ 자치도 출범과 비전에 대한 인식

- 2023년 상반기(5~6월) 조사에서 자치도에 대한 인지 정도는 보통 이상(3.15점)이었으며, 하반기(12월) 조사에서는 3.28점으로 나타나 상반기 조사보다 4.13% 정도 증가하였음. 자치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도민의 비중은 3.5%이었음
-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인지 정도는 보통 이하(2.54점)였으며, 도민 중 21.2%가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항목	속성	상반기	하반기	비고
① 전북자치도 인지 정도	□ 잘 알고 있음	36.3%	45.0%	[상반기] 평균 이상(3.15점) [하반기] 평균 이상(3.28점)
	□ 잘 모름	28.9%	21.3%	
	들어본 적 있음	23.3%	17.7%	
	들어본 적 없음	5.7%	3.5%	
② 자치도 비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인지 정도	□ 잘 알고 있음	-	21.2%	평균 이하(2.54점)
	□ 잘 모름	-	51.4%	
	들어본 적 있음	-	32.4%	
	들어본 적 없음	-	19.0%	

- 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발전 도움 정도는 보통 이상(3.64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도민 중 60.9%가 자치도 출범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다만 상반기 조사 결과(3.86점)보다 하반기 조사 결과(3.64점)가 5.7% 정도 감소함
- 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분야는 일자리 창출(21.6%), 예산 확대(19.4%), 전북위상 제고(11.4%), 시군 균형발전(10.7%), 문화관광 진흥(10.4%), 민생경제 활력(10.0%)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전북이 자치도가 된다는 인식은 갈수록 늘어나나 비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높지 않음. 생명경제라는 비전 키워드와 무관하게 일자리 확대라는 일반적인 지역발전 효과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만 보더라도 자치도를 통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인식 역시 그리 높지 않음

□ 도민 인식 대응 방향³⁾

- (특별도 인지도 제고) 전북자치도의 변화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확대
- (비전 및 특례 공감대 형성) 전북자치도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의 핵심 사안인 비전과 주요 특례에 대해 범도민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추진
- (지원·협력체계 구축)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각 분야 관계기관 및 시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 인식 확산 목표와 과제

- 전북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치도 출범과 비전(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를 통한 전북 발전의 기대효과를 알림으로써 전북자치도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
- 구체적인 과제로 ① 체감도와 접근성 높은 홍보콘텐츠 개발 및 매체 운영, ② 도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와 공무원 역량 강화, ③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지원협의체 구축을 추진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으로 희망적 여론 조성 □ 대내외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별법 개정 추진동력 창출 		
과제	체감도와 접근성 높은 홍보콘텐츠 개발 및 매체 운영	도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와 공무원 역량 강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지원협의체 구축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동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배너 등 제작 □ (매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생생TV 등 도정매체 활용 송출 □ (공간) 상설 홍보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설명회 등 □ (공무원) 특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특강 등) □ (이벤트) 문화 행사, 출범 기념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협의체 구성) 역할, 분야별 대상 선정 등 계획 수립 □ (협의체 운영) 분야별 활동 관리 및 홍보

3)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홍보계획(내부자료, 2023)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함

(2) 생명경제도시의 브랜딩 전략

□ 주요 전략과 과제(안)

① 법적 브랜드인 '생명경제도시' 브랜딩 체계 구축

- 예전 전북도에는 법률에 따른 지역브랜드가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정책용어이자 자체 지역브랜드로서 농도전북, 생명의 땅 새만금, 전통문화도시, 한국속의 한국과 같은 브랜드가 활용됨. 하지만 「전북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가 법적으로 전북자치도의 비전이자 지역브랜드로서 명시됨
- 법적 브랜드에 부합하도록 생명경제도시의 전북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조사·개발하고 포지셔닝 전략 등을 추진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생명경제도시 브랜드 구축과 관련한 「생명경제도시 브랜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브랜드 활용되도록 환경을 마련함. 또한 이러한 방향과 과제를 종합하여 생명경제도시 브랜드 종합계획을 수립함

[표 6-2] 생명경제도시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핵심 가치 설정: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브랜드 포지셔닝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서 정의한 '생명경제' 개념을 브랜드로 구체화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전북자치도의 자원 등과 연계하여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수립 ■ 기존 전북의 주요 사업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브랜드와의 통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생명경제의 핵심 가치를 접목하도록 매뉴얼 작업이 필요 - 시군의 전통문화·생태, 산업 등과 관련된 브랜딩에 있어 전북자치도와 상호협력을 추진 ■ (가칭)「글로벌생명경제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 - 부산시 조례: 도시브랜드 관련 시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브랜드 슬로건 관리 및 사용,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전북자치도 지역브랜드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지역브랜딩 전략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단위를 중심으로 브랜딩 사업을 추진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브랜드 관련 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단위의 지역브랜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함: 브랜드 아키텍처, 하드브랜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평가 및 피드백 등 추진 |
|--|

② 생명경제(도시) 브랜드 개발과 활성화

- 전북자치도 문장은 새 시대, 새 지평(New Horizon)을 뜻하며, 브랜드 슬로건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이며, 도정 슬로건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임. 이러한 문장과 슬로건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히 전북자치도의 핵심 컨셉인 ‘생명경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음
- ‘생명경제’의 법적 개념(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
- 또한 기존 지역 내 다양한 브랜드를 생명경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개선하고, 특히 생명과 친환경 성장이라는 개념에 맞게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이미지 개선도 필요함.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 브랜드 등을 생명경제와 연계하여 개선 및 확산하는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③ 생명경제 관련 하드브랜딩 구축

- 생명경제를 대표하는 공간, 장소 등을 의도적으로 발굴하여 마케팅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장 한국적인 생태자원이 보존되어 있고,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여 친환경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장소를 발굴하고, 이를 학술적 정책적으로 정립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함
- 하나의 사례로, 우리나라 4대 강 중 2개 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금강 발원지)과 데미샘(섬진강 발원지)을 대한민국 백두대간의 생명 발원지로 이미지화하고, 새 만금을 자연의 바람과 물과 빛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한 청정에너지 메카로 브랜딩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주요 문화공간,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전국 최고의 안전시설로 바꾸는 정책을 통해 생활이 가장 안전한 생명경제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④ 생명경제 관련 커뮤니케이션

-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통해 글로벌생

명경제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 지역브랜드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이미지를 개발하고, 국내 외적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함. 국내외 행사, 페스티벌 등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적극적으로 알림
- 한국에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도시가 전북자치도임을 알리기 위하여 해외에서 주최되는 각종 심포지엄,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를 통해 해외 행사를 전북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해외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찾아가는 마케팅’을 실현함
- 기존에 진행되는 각종 국제교류(문화예술교류, 학술교류, 청소년 교류, NGO 교류 등)에 생명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관련 행사를 새롭게 개발하여 개최함
- 또한, 생명경제(인간의 생명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문화ODA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생명경제도시임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음

⑤ 생명경제 브랜드의 가치 평가

- 전북자치도의 생명경제도시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관리 체계, 즉 ‘도시브랜드 자산 측정 및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함
- 지역브랜딩은 전략 추진 후에 소비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와 피드백의 과정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함
- 첫째, 전북자치도 지역브랜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함.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지역브랜드 실행계획 수립 시 함께 개발)을 추진함
- 둘째, (가칭)브랜드위원회를 통해 전북도 브랜딩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 셋째, ‘빅 데이터(Big data)’ 컨설팅 회사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북자치도에 사는 지역인과 외부인이 바라보는 전북자치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 브랜드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함

6.4. 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 검토

□ 헌법 검토

-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이 제117조와 제118조 단 2개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직접 시·도, 시·군·구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영문으로 'Local governments'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명칭에 국한해서 볼 때 'State'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직접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로 인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는 연방제 하의 자치주와는 다르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임

□ 법률 검토

- 「지방자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지만, 그 영문명칭까지 어떻게 표기한다고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영문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나, 영문번역이 법규, 즉 꼭 따라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 현행 영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경우 국가를 State로, 지방자치단체를 local government로 번역하고 있음. 제1조(목적)의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임.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제1조 이하 「지방자치법」 본문에서 등장하는 국가를 일관되게 State로 번역하여 State를 local government의 상대 개념으로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하는 제2조부터는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의 종류를 세분하여 열거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대응하는 영어 단어인 'metropolitan', 'city'를 활용하여 각각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로 쓰면서도, 도와 시, 군, 구의 경우 각기 조응하는 영어의 단어를 차용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각각 ‘Do, Si, Gun, and Gu’로 쓰고 있음

- 이렇듯 「지방자치법」 영문번역본에서 이중적인 기준에 따라 영어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① ‘시’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는 ‘city’를, 그렇지 않은 경우 ‘si’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위계를 폐지하기 위해 ‘광역’, ‘기초’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취지를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음. 영문명칭의 차이로 위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임
- 만일 특별시, 광역시나 시, 군, 구의 시의 구별없이 일관되게 ‘시’를 ‘City’, 혹은 ‘Si’라고 쓰더라도 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기존 광역 개념의 시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시’를 수식하는 명칭이 별도로 부가되어 있기 때문임
- ② 도, 군, 읍, 면 등의 행정구역 명칭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과의 명칭 차별이 문제됨
- ‘Do, Gun, Eup, Myeon’의 경우에는 각기 조응하는 영미권의 개념으로 region이나 province, county, town 등이 있음에도 고유명사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그대로 적고 있음. 각각의 특성이 외국의 행정구역 개념과 일치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행정구역의 단위는 고유하게 발전시켜 온 개념을 고유명사로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역사적으로 사용해 온 명칭을 고유명사로 인식하여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는 없음
- 다만, 도시지역을 지칭하는 ‘시’만 city라는 외국의 개념을 그대로 쓰고,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은 우리말을 고유명사화하는 이중적인 방식이 문제인 것임. 이러한 태도는 영문 명칭을 접하는 외국인에게도 어색하게 느껴질뿐더러, 우리 국민에게도 가뜩이나 도시화가 심화되는 행정환경 하에서 도시와 농·어·산촌을 구분하고 위계를 더욱 강화·확대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특별자치도의 경우 위에서 드러난 이중적인 기준의 구분 속에서도 유일한 예외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됨
- ‘도’를 ‘Do’로 번역했다면 일관성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는 Special Self-Governing Do’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굳이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Province로 번역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전반적으로 ‘도’를 ‘Province’로 번역한 규정은 특별자치도를 지칭할 때 뿐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더 개방적이고 노출의 빈도가 많아 고유명사인 ‘Do’가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Province’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 또한, Province가 어원상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이가 다스리는 지역의 의미, 시골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역인 특별자치도의 구분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오히려 역행함
- 이렇듯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영문 명칭은 일견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도시와 비도시의 구분과 차별을 확대할 수 있는 소지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임. 대외적, 대내적 합의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민의 실제 사용 측면에서 보면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제 택배 등 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및 영어로 주소를 안내할 때 등 주소를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사항들을 규율하는 「주민등록법」, 「도로명주소법」과 각각의 하위 행정입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법」은 시행령에서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기록을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을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은 「도로명주소법」을 따르게 됨
-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은 다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와는 별론으로, 법제처는 「도로명주소법」의 본문에 나오는 국가와 특별자치도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State’와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번역하고 있음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

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의 도로명 주소는 ‘Jeollabuk-do’임

- 붙임표와 행정구역단위 명칭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市)’임을 감안해 ‘-si’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따르지 않고 ‘-si’표기를 생략하고 있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 군, 읍’임
-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용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우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언급 없이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 주소나 주민등록의 영문 표기 시에도 ‘시(-si)’뿐만 아니라 ‘특별’이나 ‘광역’도 생략되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붙임표와 행정구역단위를 표시하는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특별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가 문제됨. 각기 ‘도’와 ‘시’의 일종으로 본다면 ‘-do, -si’로 적어야 할 것이나,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면 형성의 자유가 생김
- 현재 도로명주소 영문표시는 전자 해석을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명주소는 ‘Gangwon-do’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로명 주소는 ‘Sejong-si’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명주소는 ‘Jeu-do’로 표기되고 있음. ‘si’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Sejong’으로만 표기해도 무방할 것임
- 이와 같이 여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법률이 아니라 장관의 고시, 즉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임. 즉,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주소를 표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나 대외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상징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나 일정한 규칙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자치도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대외 행사 등에 영문 명칭으로 ‘Gangwon State’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두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벗어난 용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영문번역에 따르면 Seoul metropolitan city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도로명 주소에 사용하는 용례에 따르면 단순히 Seoul로만 표기되어야 할 것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명칭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임
-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local government’로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government’라는 명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조응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음. government를 명칭에 사용하는 용례 역시 서울특별시가 유일함
-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광주광역시의 경우 ‘Gwangju Metropolitan City’가 아닌 ‘Gwangju City’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명칭에 특별자치의 의미인 ‘special self-governing’을 빼고 ‘Sejong City’로만 표기하고 있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정하고 있음

□ 검토 결론

-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만 그것의 영문 명칭을 어떻게 쓰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제처에서 영문번역본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도로명주소법」과 「주민등록법」에서는 영문 명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할뿐더러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Jeonbuk State’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며, State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다른 명칭도 자신의 결단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연구수행기관

전북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장세길	(책임연구위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김수은	(책임연구위원)
	김시백	(책임연구위원)
	김재구	(책임연구위원)
	김형오	(선임연구위원)
	나정호	(책임연구위원)
	은성태	(연구위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
	이지훈	(책임연구위원)
	장남정	(선임연구위원)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천정윤	(연구위원)
	천지은	(연구위원)
	하의현	(연구위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이동기	(초빙연구위원)
	복혜리	(전문연구원)
	신지원	(전문연구원)
	안동신	(전문연구원)
이대성	(전문연구원)	
정미선	(전문연구원)	
조하진	(전문연구원)	
